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20세기 초 식민지 알제리에서 시민권과 라이시테(laïcité)

- 에미르 칼레드(Emir Khaled)의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과

이 하 나

20세기 초 식민지 알제리에서 시민권과 라이시테(laïcité)

- 에미르 칼레드(Emir Khaled)의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권 윤 경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과

이 하 나

이하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위 원 장 주 경 철 (인)

부위원장 권 윤 경 (인)

위 원 노 경 덕 (인)

국문초록

라이시테(Laïcité)는 오늘날 프랑스 공화국의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는 가치이지만, 그것은 식민지 알제리에서 결코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프랑스는 알제리 선주민들이 완전한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종교적 가족법을 포기하고 프랑스 민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들에게 사법상의 라이시테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1905년 정교분리법을 알제리에 적용할 때에는 식민 당국이 무슬림 선주민들의 종교 활동을 계속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조치들을 취했다. 전자가 종교와 공적 영역 간의 분리를 피식민 무슬림에게 '의무'로서 부과한 라이시테 원칙이었다면, 후자는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보장할 '권리'로서의 라이시테를 박탈하는 정책이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알제리 무슬림들은 이슬람 가족법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프랑스 시민권에서 배제된 '신민'의 지위에 머물렀고, 정교분리법의 불완전한 시행으로 인해 식민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수행할 가능성 역시 부정당했다. 이처럼 식민지 알제리의 사법 영역과 종교활동 영역에서 모순적으로 작동한 프랑스의 라이시테 정책은 궁극적으로 무슬림이 프랑스에 '위험'하다는 안보적 시각에서 정당화되었다.

알제리 무슬림들의 시민권을 제약하는 원리로 작동한 라이시테 정책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부상한 근대적인 무슬림 지식인 집단인 '청년 알제리인(Jeune Algérien)' 운동의 도전을 받았다. 이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선주민 징병과 참전에 대한 보상으로 알제리 선주민들의 권리 확대를 요구하였다. 본고는 이 과정에서 무슬림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충돌한 라이시테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기존 연구들은 청년 알제리인 운동의 시민권 요구를 상세히 다루었지만 1908년부터 알제리에 시행되기 시작한 정교분리법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에 따라 1930년대부터 알제리 민족운동이 정교분리법의 완전한 적용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어도 그보다 앞선 시기에 무슬림 지식인들이 정교분리 의제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는 분명하게 규명되지 못했다. 이에 본고는 20세기 초 청년 알제리인 운동의 시민권 요구와 정교분리법 대응을 통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들이 프랑스의 라이시테를 어떻게 전유해 새로운 형태의 '제국적 시민권'으로 재구성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청년 알제리인 운동의 중심적 지도자이자 알제리 민족운동사상 처음으로 정교분리법의 완전한 적용을 요구했다고 일컬어지는 에미르 칼레드(Emir Khaled)에 주목하였다. 칼레드를 중심으로 한 무슬림 지식인들은 알제리 선주민들이 프랑스 시민들과 '평등'하기를 바라면서도 이슬람 신앙과 관련된 '차이' 또한 존중받기를 바랐다. 그에 따라 칼레드는 프랑스 시민권의 전제조건이 된 사법상의 라이시테 원칙을 완화하여 알제리 무슬림들이 이슬람 가족법을 보유한 채로 시민적 권리들을 누릴 수 있기를 요구하였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알제리 선주민의 희생을 프랑스에 대한 충성의 증거로 제시하였고 다른 식민지에서 종교적 가족법을 유지한 채 시민권을 부여한 선례가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무슬림이 '위험'하다는 안보적 시각을 반박할 '충성'의 논리를 제시하는 한편, 복잡한 제국 현실에 대처하는 실용적 해법으로 법적 라이시테가 약화된 대안적 시민권을 옹호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사법상의 라이시테에 반기를 든 칼레드는 알제리에서 라이시테가 문제된 또 다른 영역, 즉 종교활동의 영역에서는 '권리로서의 라이시테'를 적극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프랑스 식민 당국이 1905년 정교분리법을 지키지 않는 현실을 규탄함으로써 사법 영역에서와 달리 신앙활동의 영역에서 '예배의 자유'를 의미하는 라이시테의 보장을 촉구하였다. 1920년 알제리 재정대표단에 당선된 후 칼레드는 정교분리법의 즉각적인 적용 대신 무슬림 예배 예산의 증액을 건의했지만, 이는 피식민 무슬림들이 자율적인 종교 재정 기반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슬람 신앙 활동을 보존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한 결과였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그는 종교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식민 당국에 굴종적인 이슬람 종교 결사 인사들과 대립하였고 무슬림 주민들을 위한 메카

성지순례의 자유를 요구하였다. 1924년에 이르러 현실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비로소 칼레드는 '정교분리법의 완전한 적용'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다. 이는 알제리 민족운동사상 최초로 정교분리 의제를 명시적인 강령으로 요구한 것이었으며, 그 이전 칼레드의 정치활동 속에서 '권리로서의 라이시테'를 꾸준히 추구했던 행보와도 일관된 것이었다.

이상의 정치활동을 종합했을 때 칼레드를 필두로 한 청년 알제리인 운동 지식인들은 알제리 무슬림들에게 '의무'로서 부과되는 사법상의 라이시테를 상대화하고 이 무슬림들이 박탈당한 '권리로서의 라이시테', 즉 예배의 자유를 시민적 자유의 하나로서 보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적 시민권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요구에는 분명 논리적 모순이 존재했지만 그것은 라이시테와 시민권을 연동해 무슬림을 열등한 지위로 고착화시킨 식민지 현실을 돌파하려는 시도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프랑스의 라이시테가 그만큼 복합적이고 해체 가능한 역사적 구성물임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요컨대 20세기 초 식민지 알제리의 근대적인 무슬림 지식인들은 선주민 징병과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계기로 제국적 시민권을 새롭게 구상했던 맥락 속에서 프랑스의 모순적인 라이시테 정책을 재전유함으로써 그동안 제국의 이질적인 신민들을 포용할 수 없었던 프랑스 공화주의 원리에 대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식민지 알제리, 시민권, 라이시테, 이슬람, 청년 알제리인 운동, 에미르 칼레드
학 번 : 2017-26701

목 차

Ⅰ. 서론 ····· 1

Ⅱ. 식민지 알제리의 라이시테 정책
: 사법상의 정교분리와 종교활동 통제 ····· 11

Ⅲ. ‘청년 알제리인’ 운동의 선주민 권리 확대 요구
····· 23

Ⅳ. 에미르 칼레드의 정치활동
: 무슬림의 시민권과 라이시테의 재전유 ····· 36

Ⅴ. 결론 ····· 53

참고문헌 ····· 56

Abstract ····· 68

Ⅰ. 서론

“무슬림은 프랑스 공화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가?” 이는 오늘날 프랑스 사회에서 가장 큰 갈등 중 하나인 무슬림 이민자 문제가 던지는 화두이다. 1980년대부터 이민 문제가 프랑스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난 형태는 주로 ‘히잡 사건’[1]처럼 무슬림들이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와 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었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프랑스 공화국의 주요한 기치로 일컬어지는 ‘라이시테’였다. 한국어로 ‘세속성’, ‘정교분리 원칙’ 등으로 번역되는 ‘라이시테’는 종교사회학자 장 보베로(Jean Baubérot)에 따르면, 양심과 예배의 자유, 국가와 시민사회의 종교적 권위로부터의 독립성, 모든 종교 간의 평등한 대우 이 3가지 원리로 구성된다.[2] 하지만 현실에서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원리가 더 부각되어 보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주류 프랑스 사회의 시각에서 라이시테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엄격히 적용해 모든 종교는 오직 사적 영역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해되었고, 이는 공공장소에서 이슬람의 상징인 ‘히잡’을 착용하는 무슬림 이민자들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즉 이슬람은 종교 교리가 공적 생활을

1) 1989년 크레유(Creil) 시의 한 중학교에서 무슬림 여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히잡을 벗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는 프랑스 공화국의 라이시테 원칙과 무슬림 이민자 통합 문제를 둘러싼 전 사회적인 논란을 촉발했다. ‘히잡 사건’과 유사한 논쟁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2004년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적 상징물 착용 금지 법안’, 2010년 ‘전신베일의 공공장소 착용 금지 법안’ 등의 입법으로 이어졌다. 박단, 「‘히잡 착용 금지 논쟁’과 무슬림이민자 통합 문제」, 『프랑스사 연구』, 38호 (2018), p. 71. ‘히잡 사건’을 상세히 다룬 국내 연구로는 박단, 『프랑스의 문화전쟁 - 공화국과 이슬람』(책세상, 2005) 참고.

2) Jean Baubérot, “La laïcité en crise?,” *Informations sociales*, vol. 136, no. 8 (2006), pp. 58-59; idem, “Sécularisation, laïcité, laïcisation,” *Empan*, vol. 90, no. 2 (2013), pp. 34-35; 임승휘, 「근대 초 프랑스의 정치적 세속화」, 김응종·민유기 외 지음, 『프랑스의 종교와 세속화의 역사』(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p. 83; 한동훈, 『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laïcité)의 원칙』(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pp. 5-6.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내용을 가리킬 경우 ‘정교분리’를, 철학적·이념적 차원을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할 때에는 ‘라이시테’를 쓰고자 한다.

직접 규율하는 정교일치적 특성을 가지므로 이 신앙을 고수하는 무슬림들은 라이시테에 입각한 프랑스 공화국의 시민이 될 수 없다고 여겨진 것이다.

이처럼 무슬림들을 동화불가능한 존재로 보고 시민권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논리는 과거 프랑스 식민제국의 통치 방식에서 고스란히 발견된다. 특히 이슬람권 지역 중 프랑스 공화국의 '불가분한 일부'로 통합되었던 알제리는 라이시테를 매개로 한 '동화주의'[3] 식민 기조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곳이다. 한편으로 프랑스는 1865년 7월 14일 원로원 결의안을 통해 알제리 무슬림들이 프랑스 시민권을 인정받으려면 이슬람 가족법(statut personnel)을 포기하고 프랑스 민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종교가 시민법의 영역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법적 라이시테' 원칙을 근거로 알제리 무슬림들의 시민적 권리를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 프랑스의 라이시테를 축성하는 1905년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이하 '정교분리법')은 알제리에 적용될 때 식민 국가가 계속해서 무슬림 주민들의 신앙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불완전하게 시행되었다. 즉 프랑스는 피식민 무슬림들에게 시민권의 전제 조건으로 사법상의 라이시테를 충족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그 무슬림들에게 국가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신앙활동을 보장할 또 다른 의미의 라이시테는 허용치 않은 것이다. 이는 오늘날 프랑스 공화국의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는 라이시테 원칙이 실제 역사 속에서 식민주의와 결합해 얼마나 자기분열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었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프랑스 공화국의 '자기분열상'에 피식민 알제리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기서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은 전간기에 발전한 알

3) 프랑스의 알제리 식민 통치 기조는 흔히 '동화주의'로 일컬어지지만, 실제로 동화 정책이 전면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식민지 알제리에서 '동화주의'가 작동한 복잡한 방식을 탐구한 연구로는 Saliha Belmessous, *Assimilation and Empire: Uniformity in French and British Colonies, 1541-195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117-204; Michelle Mann, "Not Quite Citizens: Assimilation, World War One and the question indigène in Colonial Algeria 1870-1920" (PhD diss., Brandeis University, 2017) 참고.

제리 민족운동이 식민 국가의 정책을 정확히 뒤집어 이슬람 가족법을 보존한 시민권과 1905년 정교분리법의 '완전한' 적용을 동시에 요구했다는 점이다.[4] 법적 라이시테 원칙을 완화해 알제리 무슬림들에게 종교적인 가족법의 포기 없이도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19세기 말부터 식민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요구안으로 꾸준히 제기되었다. 아울러 정교분리법의 전면적 적용은 1930년대 이슬람 개혁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알제리 민족운동 단체들의 주요한 강령으로 제시되었다.[5] 이 두 요구안에 관해서는 각각 별개로 상당한 양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만,[6] 기존 연구들은 라이시테 측면에서 상충하는 두 요구안이 어떻게

---

4) 알제리 민족운동의 강령과 주요 선언문에 관해서는 Claude Collot and Jean-Robert Henry, *Le Mouvement national algérien: textes, 1912-1954* (Paris: L'Harmattan, 1978) 참고.

5) 식민지 알제리에서 이슬람 개혁주의 운동은 알제리의 민족정체성을 아랍-무슬림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1905년 정교분리법의 완전한 적용을 요구하여 기존 연구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 개혁주의 울라마 운동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로는 Ali Mérad, *Le réformisme musulman en Algérie de 1925 à 1940* (Paris: Mouton, 1967); Charlotte Courreye, "L'Association des Oulémas Musulmans Algériens et la construction de l'État algérien indépendant: fondation, héritages, appropriations et antagonismes (1931-1991)" (PhD diss., Université Sorbonne Paris Cité, 2016) 참고.

6) 식민지 알제리에서 무슬림 선주민들의 시민권 문제를 다룬 주요 연구로는 Laure Blévis, "La citoyenneté française au miroir de la colonisation : étude des demandes de naturalisation des « sujets français » en Algérie coloniale," *Genèses*, vol. 53, no. 4 (2003); Patrick Weil, "Le statut des musulmans en Algérie coloniale - Une nationalité française dénaturée," *Histoire de la justice*, vol. 16, no. 1 (2005); Florence Renucci, "Le statut personnel des indigènes: comparaison entre les politiques juridiques française et italienne en Algérie et en Libye (1919-1943)" (PhD diss., Université Aix-Marseille 3, 2005) 참고. 한편 식민지 알제리에서 프랑스의 정교분리가 어떻게 적용, 전유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라베르 아쉬(Raberh Achi)가 2004년 이래로 가장 왕성하게 연구해오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연구는 Raberh Achi,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à l'épreuve de la situation coloniale. Les usages de la dérogation dans l'administration du culte musulman en Algérie (1905-1959)," *Politix*, vol. 17, no. 66 (2004); idem, "L'islam authentique appartient à Dieu, "l'islam algérien" à César," *Genèses*, vol. 69, no. 4 (2007); idem, "La laïcité, une cause anticoloniale. La mobilisation de la mouvance réformiste musulmane contre l'administration de l'islam en Algérie coloniale," Amin Elias, Augustin Jomier and Anaïs-Trissa Khatchadourian, ed., *Laïcités et musulmans. Débats et expériences (XIXe-XXe siècles)* (Berne: Peter Lang, 2014) 참고. 다만 그의 연

양립할 수 있었으며 그 두 강령 간의 관계는 무엇이었는지 깊이 있게 분석하지 않았다.[7]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하려면 알제리 무슬림들이 프랑스의 라이시테 정책을 받아들이고 전유한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시민권 요구와 정교분리 의제를 통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기는 바로 20세기 초이다. 이 시기는 정교분리법의 불완전한 시행으로 알제리에서 라이시테 운용의 모순이 명징하게 드러났던 시기일 뿐만 아니라, 식민지 알제리 최초로 근대적인 무슬림 지식인들이 등장해 향후 알제리 민족운동의 주요한 강령을 형성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비록 소수지만 프랑스식 교육을 받고 서구 사상을 수용한 신흥 알제리인 엘리트들은 19세기 말부터 다양한 결사체를 조직하고 언론을 창간해 알제리 선주민[8]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슬람 세계에서 흥기하고 있던 청년 투르크인 운동, 청년 튀니지인 운동처럼 '청년 알제리인(Jeune Algérien)' 운동이라 불린 이 지식인 집단은 프랑스 공화국의 이상에 기대어 식민 치하 알제리 무슬림들의 권리 확대와 프랑스 시민들과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다. 이들이 바로 이슬람 가족법을 보존한 새로운 형태의 무슬림 시민권을 본

구는 1930~1950년대에 걸친 알제리 이슬람 개혁주의 운동에 집중하고 있어 그보다 앞선 시기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한편 국내 연구로는 박단이 식민지 알제리의 시민권과 정교분리 문제를 다룬 바 있다. 박단, 「프랑스 내 무슬림 차별 기원으로서의 식민주의 유산 - 프랑스의 알제리 식민지 동화정책과 시민권 문제를 중심으로」, 『통합유럽연구』, 11권 3집 (2020); 박단, 「프랑스 내 무슬림 차별 기원과 공화주의 유산 - '1905년 법'과 그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유럽연구』, 제12권 1집 (2021).

7) 알제리 민족운동에서 두 강령이 동시에 제기되었다는 점은 기존 연구들에서 간단한 지적에 그치고 있다. Anna Bozzo, "Société civile et citoyenneté en Algérie: essor et déclin d'un mouvement associatif indépendant (xix-xxe siècle)," Anna Bozzo and Pierre-Jean Luizard, ed., *Les sociétés civiles dans le monde musulman* (Paris: La Découverte, 2011), p. 108; James McDougall, *A History of Alger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p. 151-152.

8) 프랑스 식민 치하 알제리에서 유럽인 식민 정착민을 제외한 피식민 알제리인들은 '원주민(indigène)'이라 불렸다. 다만 이 용어에는 경멸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원주민' 대신 '선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원주민법(Indigénat)'과 같이 당대의 경멸적 의미가 반영된 고유명사를 언급할 때에만 '원주민'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식민 치하 알제리에서 '원주민', '알제리인' 지칭이 갖는 의미는 Arthur Asseraf, *Electric News in Colonial Alger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pp. 14-15 참고.

격적으로 제기한 주역이었으며, 20세기 초 알제리에 적용되기 시작한 정교분리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에 대응할 방안을 고심했던 선구적 집단이었다.

청년 알제리인 운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이 지식인들의 시민권 요구를 상세하게 분석했던 반면,[9] 정교분리법에 대한 반응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몇몇 반(反)교권주의적 인사들이 청년 알제리인 운동 내부에 존재했다는 사실이 간단하게 언급되었을 뿐인데,[10] 그럼에도 청년 알제리인 운동의 대표적 지도자인 에미르 칼레드(Emir Khaled)가 1924년 당시 프랑스 수상 에두아르 에리오(Édouard Herriot)에게 보낸 편지에서 알제리 민족운동사상 처음으로 정교분리법의 완전한 적용을 요구했다는 점은 일관성 있게 지적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11] 다만 이러한 지적은 기존 연

9) 청년 알제리인 운동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로는 Charles-Robert Ageron, "Le mouvement Jeune-Algérien de 1900 à 1923," *Genèse de l'Algérie algérienne. Volume 2* (Paris: Editions Bouchène, 2005); Mahfoud Kaddache, *Histoire du nationalisme algérien, Tome I, 1919 - 1939* (Alger: EDIF, 2003[2000]), pp. 71-118; Abdelkader Djeghloul, *Eléments d'histoire culturelle algérienne* (Alger: ENAL, 1984) 참조. 최근 제1차 세계대전의 맥락을 중시하여 청년 알제리인 운동을 재조명한 연구로는 Mann, "Not Quite Citizens"; Dónal Hassett, *Mobilizing Memory: The Great War and the Language of Politics in Colonial Algeria, 1918-193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참고.

10) Ahmad Koulakssis and Gilbert Meynier, *L'Emir Khaled, premier za'im? Identité Algérienne et colonialisme français* (Paris: L'Harmattan, 1987), p. 51; McDougall, *A History of Algeria*, pp. 150-151. 최근 알제리 학자 압델카데르 살림 알 하사르(Abdelkader Salim El Hassar)는 언어학적인 담론 분석을 통해 청년 알제리인 운동 인사 중 벤 알리 파카르(Ben Ali Fekar)와 무함마드 벤 라할(M'hamed Ben Rahal)이 근대적으로 쇄신된 이슬람과 자유주의적 라이시테를 추구했음을 밝혔다. 하지만 그의 분석은 일부 지식인의 담론에 국한되어 있고 구체적인 정치활동 속에서 정교분리 의제가 형성되어간 현실적 과정은 다루고 있지 않은 한계를 보인다. Abdelkader Salim El Hassar, "Les « Jeunes Algériens » Procédés et engagement Analyse du discours politique de Si M'hamed Ben Rahal et Ben Ali Fekar" (PhD diss., Université Abou Bekr Belkaid Tlemcen, 2019).

11) Franck Frégosi, "Islam et état en algérie. Du gallicanisme au fondamentalisme d'état," *Revue des mondes musulmans et de la Méditerranée*, no. 65 (1992), p. 62; Francesca De Lellis, "L'Algeria Coloniale e La Legge di Separazione delle Chiese dallo Stato del 1905," *Africa: Rivista trimestrale di studi e documentazione dell'Istituto italiano per l'Africa e l'Oriente*, vol. 59, no. 3/4 (2004), pp. 405-410; Anna Bozzo, "Islam et

구들에서 한 번의 언급으로 그칠 뿐 보다 자세한 분석이나 깊이 있는 연구로는 발전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연구사의 공백은 1905년 정교분리법을 명확히 언급한 청년 알제리인 운동 측 사료가 드물고 프랑스의 라이시테에 대한 무슬림 지식인들의 태도가 대체로 모호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특히 19세기 말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무슬림 시민권 의제와 달리 정교분리법은 1908년에 알제리에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1930년대에 이르러서야 그 적용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는지, 1908년과 1930년 사이에 정교분리 강령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게 남아있다. 하지만 이 모호성 속에서 20세기 초 알제리 무슬림 지식인들이 1905년 정교분리법 시행에 보였던 반응을 추적한다면, 그리고 이들이 정교분리 의제를 법적 라이시테에 맞선 무슬림 시민권 기획과 어떠한 관계에 놓았는지 밝혀낸다면, 이는 기존 연구사의 공백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식민지에서 라이시테를 둘러싼 복잡한 동학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청년 알제리인 운동의 시민권 기획과 정교분리법 대응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데, 프레데릭 쿠퍼(Frederick Cooper)와 도널 하셋(Dónal Hassett)이 제시한 '제국적 시민권(imperial citizenship)' 개념이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식민주의 연구에서 '시민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쿠퍼는 시민권을 단순한 법적 범주가 아니라 "정치체와 관련된 권리 및 의무의 분할 가능하고 유연한 묶음"[12]으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 개념을 통해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의 탈식민화 과정에서 제기된 대안적 형태의 '제국적 시민권' 구상을 분석함으로써 제국의 해체와 민족국가 독립을 필연적인 것으로 가정하는 관습적 서사를 재고하고 민족주의의 승리로 수렴되지 않는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포착하고자 했다.[13] 이러한 쿠퍼의 통찰을 주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

citoyenneté en Algérie sous la IIIe République: logiques d'émancipation et contradictions coloniales (l'exemple des lois de 1901 et 1905)," Pierre-Jean Luizard, ed., *Le choc colonial et l'islam* (Paris: La Découverte, 2006), p. 216.

12) Frederick Cooper, *Citizenship, Inequality, and Difference: Historical Perspectiv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p. 4.

13) Frederick Cooper, *Citizenship Between Empire and Nation: Remaking*

삼은 도널 하셋은 전간기 알제리에서 분출된 식민 체제 개혁의 요구안들을 '제국적 시민권'으로 개념화해 고찰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 참전과 그에 대한 보상이 핵심적인 정치 언어로 작동한 방식을 규명했다.[14] 이상의 개념틀을 바탕으로 20세기 초 알제리 무슬림 지식인들이 제기한 정치적 요구 사항들을 새로운 형태의 제국적 시민권으로 묶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하셋의 연구는 본 연구와 가장 중첩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의 연구가 알제리 선주민들의 제국적 시민권 요구에 있어서 제1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이 갖는 핵심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논문은 하셋과 같이 제1차 세계대전의 맥락에 유의하되 이 시기 무슬림 지식인들의 제국적 시민권 요구를 라이시테의 재전유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기실 청년 알제리인 운동은 프랑스의 징병과 전시 동원에 대한 보상으로 대안적인 제국적 시민권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식민 무슬림을 프랑스 시민권에서 배제해 온 암묵적 원리인 라이시테를 재전유할 필요가 있었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청년 알제리인 운동의 중심적 지도자이자 정교분리법의 완전한 적용을 최초로 요구했다고 일컬어지는 에미르 칼레드에 주목하고자 한다. 칼레드는 19세기 전반 프랑스의 침공에 맞서 싸운 전설적인 알제리 저항 지도자 압델카데르(Abd al-qadir)의 손자로 태어나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부터 1924년까지 짧지만 강렬한 정치활동을 전개했던 인물이다. 그는 『이슬람(L'Islam)』과 『이크담(L'Ikdam, 아랍어로 '용기'라는 뜻)』과 같은 알제리 무슬림 지식인들의 신문을 통해 활발한 언론 활동을 벌였으며, 1919년 2월 4일 법의 통과로 새롭게 열린 알제리 지방 선거에 당선되어 피식민 알제리인들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France and French Africa, 1945 - 196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14) Hassett, *Mobilizing Memory*; idem, "Reinventing Empire in the Wake of the Great War: Imperial Citizenship and the "Wilsonian Moment" in Colonial Algeria," *Comparativ*, vol. 26, no. 6 (2016); idem, "Defining Imperial Citizenship in the Shadow of World War I: Equality and Difference in the Debates around Post-War Colonial Reform in Algeria," Gearóid Barry, Enrico Del Lago and Róisín Healy, ed., *Small Nations and Colonial Peripheries in World War I* (Leiden: Brill, 2016).

대변하는 데 앞장섰다. 이 과정에서 그가 무슬림 정체성을 중시하며 이슬람 가족법을 유지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권을 옹호했다는 점, 그리고 1924년에 정교분리법의 완전한 적용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은 사법 영역과 종교활동의 영역 둘 사이에서 모순적으로 작동한 프랑스의 라이시테에 무슬림 지식인이 대응한 방식을 통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에 본고는 에미르 칼레드의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그를 비롯한 알제리 무슬림 지식인들이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새로운 제국적 시민권을 요구했던 맥락 속에서 자신들의 무슬림 정체성과 충돌했던 프랑스의 라이시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전유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에미르 칼레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그가 민족주의자였는가 아닌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15] 정교분리 문제를 다룬 칼레드의 시각을 심도 있게 파헤친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다. 칼레드가 법적 라이시테를 상대화한 무슬림 시민권을 적극 옹호했다는 점은 기존 연구들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졌지만,[16] 1924년에 그가 정교분리법의 완전한 적용을 요

15) 특히 1960~70년대에 알제리와 프랑스 학자들 사이에서 칼레드가 최초의 알제리 민족주의 지도자인지 아니면 프랑스에 충성한 협력자인지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논란은 칼레드가 1919년 5월 윌슨 대통령에게 민족자결권의 원칙에 따라 알제리인들이 국제연맹의 보호 하에 대표를 가질 수 있게 해 줄 것을 비밀리에 청원한 편지가 발견되면서 일단락되었다. 현재까지 칼레드에 관해 가장 방대한 연구를 수행한 아흐마드 쿨락시스(Ahmed Koulakssis)와 질베르 메니에(Gilbert Meynier)는 그를 민족주의자이면서 동시에 프랑스에 충성했던 복합적인 인물로 평가한다. Koulakssis and Meynier, *L'Emir Khaled*, pp. 8-9, 126-130, 321-327; Lizabeth Zack, "Early origins of Islamic activism in Algeria: the case of Khaled in post-World War I Algiers," *Journal of North African Studies*, vol. 11, no. 2 (2006), pp. 206-207.

16) 에미르 칼레드의 정치활동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칼레드를 최초의 알제리 민족주의자로 평가한 알제리 역사가 마흐푸드 카다슈(Mahfoud Kaddache), 이에 비판적이었던 프랑스 역사가 샤를-로베르 아주롱(Charles-Robert Ageron), 그리고 양자의 입장을 종합한 아흐마드 쿨락시스와 질베르 메니에의 연구를 들 수 있다. Mahfoud Kaddache, *L'Emir Khaled: Documents et témoignages pour servir à l'étude du nationalisme algérien* (Alger: Office des Publications Universitaires, 1987); Charles-Robert Ageron, "Enquête sur les origines du nationalisme algérien. L'émir Khaled, petit-fils d'Abd El-Kader, fut-il le premier nationaliste algérien?," *Revue de l'Occident musulman et de la Méditerranée*, no. 2 (1966); Koulakssis and Meynier, *L'Emir Khaled* 참조. 에

구했다는 사실은 간단한 언급에만 그칠 뿐 라이시테에 관한 칼레드의 입장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계기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식민지 알제리의 정교분리 문제를 왕성하게 연구한 라베르 아쉬(Raberh Achi)조차 1924년 칼레드의 정교분리법 적용 요구를 두고 그것이 칼레드의 전체적인 정치 기획 내에서는 부차적인 위치에 머물렀다고 평가했을 뿐이다.[17] 하지만 본고는 정교분리법에 대한 그의 입장을 주변적이거나 일탈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20세기 초 알제리 무슬림 지식인들의 제국적 시민권 구상 속에서 라이시테를 재전유한 기획의 일환으로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Ⅱ장에서는 식민지 알제리에서 프랑스의 라이시테 정책이 사법적 영역과 종교활동 영역에 서로 모순적으로 적용된 방식을 개관한다. 여기서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원칙이 식민지 안보의 논리 하에 알제리 무슬림들에게 '의무로서의 라이시테'를 부과하고 '권리로서의 라이시테'를 박탈하는 형태로 드러났음을 보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Ⅲ장에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청년 알제리인 운동의 부상과 에미르 칼레드의 정치 입문을 다룬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프랑스가 선주민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알제리 무슬림 지식인들이 선주민들의 권리 확대를 요구한 가운데 정교분리법의 불완전한 시행에 대해서도 나름의 입장을 수립했음을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본격화된 칼레드의 정치활동을 살펴보면서 그를 중심으로 한 청년 알제리인 운동이 현실 정치 속에서 정교분리 문제에 대처하고 이 문제를 무슬림의 새로운 제국적 시민권 안에 위치시킨 방식을 고찰할 것이다. 이 시기 칼레드의 언론 활동, 선거운동, 재정대표단 활동을 분석하여 알제리 무슬림을 위한 시민권 요구와 정교분리법 요구가 서로 교차하고 논리적으로 모순을 일으키면서도 현실적으로 공존했던 양상을 탐구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에미르 칼레드

미르 칼레드를 다룬 아랍어 저서는 Bassām 'Asalī, *al-Amīr Khālid al-Hāshimī al-Jazā'irī wa-al-difā' 'an Jazā'ir al-Islām* ('에미르 칼리드와 이슬람 알제리의 수호') (Beirut: Dār al-Nafā'is, 1986) 참고.

17) Raberh Achi, "Les apories d'une projection républicaine en situation coloniale: la dépolitisation de la séparation du culte musulman et de l'État en Algérie," Luizard, ed., *Le choc colonial et l'islam*, p. 242.

를 비롯한 20세기 초 알제리 무슬림 지식인들이 식민지에서 모순적으로 작동한 프랑스의 라이시테 원칙을 어떻게 전유하여 대안적인 제국적 시민권으로 재구성했는지 밝힐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사의 공백을 풍부하게 규명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라이시테가 식민지의 맥락에서 변형되고 전유 혹은 전복된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식민지 알제리의 라이시테 정책
: 사법상의 정교분리와 종교활동 통제

1830년 알제리 침공에 나선 이래로 프랑스는 알제리 선주민의 대다수가 믿는 종교인 이슬람을 식민 지배 확립에 가장 큰 방해물이라고 여겼다. 1830년 7월 5일 프랑스군 총사령관 부르몽(Louis de Bourmont)은 알제(Algiers, 프랑스어로는 Alger, 오늘날 알제리의 수도)의 오스만 정부[18]를 함락시키고 이들과 체결한 항복 조약에서 현지 주민들에게 이슬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약속했으나,[19] 정복 초창기부터 수피(Sufism, 이슬람 신비주의 사상) 종단을 중심으로 한 저항에 부딪힌 식민 당국은 무슬림 주민들의 종교 생활을 통제함으로써 식민지 안보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한 조치로 프랑스는 알제리의 이슬람 종교기금 재산인 '후부스(hubous, 프랑스어로는 대개 'habous'로 표기)'[20]를 몰수하였으며 무슬림 사법을 프랑스 식 법체계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후부스는 이슬람 종교 기관을 유지하고 교육이나 자선 사업을 운영하는 재정적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통제는 곧 무슬림 종교 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와 직결되었다. 1830년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알제리 후부스를 몰수한 프랑스는 그 수입을 국유재산에 통합해 식민 국가의 통제

---

18) 도시 알제를 포함해 '중앙 마그레브(Magrib al-Awsat)'라 불린 지금의 알제리 북부 지역은 1830년 프랑스의 침공이 있기 전까지 1519년부터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았다. 오스만 치하 이 지역은 '알제국國(Qotr al-jaza'ir 혹은 watan al-jaza'ir, 직역하면 the Country of Algiers)'이라 불렸다. Abla Gheziel, "L'éveil politique de la société algérienne à travers révoltes, soumission, assimilation et nationalisme, 1830-1936" (PhD diss., Université Toulouse le Mirail - Toulouse II, 2015), p. 29.

19) Jacques Carret, "Le problème de l'indépendance du culte musulman en Algérie," *L'Afrique et l'Asie*, no. 37 (1957), p. 46.

20) 후부스 혹은 와크프(waqf)는 이슬람에서 종교적 목적으로 기증된 동산 혹은 부동산을 의미한다. 이 재산의 수입금은 종교시설의 건립 및 유지보수, 아동 교육, 빈자 부양 등에 사용되었다. Carret, "Le problème de l'indépendance," pp. 45-46; Oissila Saaïdia, "L'invention du culte musulman dans l'Algérie coloniale du xixe siècle," *L'Année du Maghreb*, no. 14 (2016), https://doi.org/10.4000/anneemaghreb.2689 (최종검색일: 2023년 6월 28일).

하에 무슬림 종교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였다.[21] 과거 후부스 수입으로 유지되었던 모스크와 이슬람 학교들은 물론, 신앙 활동을 집전하는 종교 인사들의 보수와 각종 부대 비용 지출까지 식민 정부의 소관으로 들어오게 되었다.[22] 이처럼 알제리 무슬림들의 종교활동 영역이 비(非)무슬림 식민 국가의 통제 하에 있게 된 가운데 기존에 이슬람이 담당했던 교육과 사법 영역은 프랑스의 법제도를 이식하는 '동화' 정책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후부스를 상실한 전통적인 이슬람 교육 기관들은 군사 정복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체되었고 이를 대신하고자 한 프랑스 식 학교교육이 극소수의 알제리 선주민들에게 제공되었다.[23] 아울러 무슬림 사법의 경우 공법과 형법 및 재산법은 대부분 프랑스법으로 대체

---

21) 19세기 전반 프랑스의 후부스 몰수 과정 개관은 Sadek Sellam, *La France et ses musulmans. Un siècle de politique musulmane (1895-2005)* (Paris: Fayard, 2006), pp. 142-146; Oissila Saaïdia, *Algérie coloniale. Musulmans et chrétiens : le contrôle de l'État (1830-1914)* (Paris: CNRS Editions, 2015), pp. 45-50 참조. 식민 당국이 몰수한 후부스는 1843년 3월 23일 전쟁부 부령(部令), 1851년 6월 16일 알제리의 소유권에 관한 법을 거쳐 1875년 12월 23일 법을 통해 프랑스 국유재산에 완전히 통합되었다. Anatole Biré, *Étude sur la condition juridique des églises, temples, presbytères* (Paris: A. Giard, 1890), pp. 183-184; Carret, "Le problème de l'indépendance," p. 47; Saaïdia, *Algérie coloniale*, pp. 96, 99, 103.

22) 1846년 7월 24일 왕령으로 전쟁부 산하 알제리 문제 관리청(Direction des Affaires de l'Algérie)에 편입된 '법무 및 종교 사무국(Bureau de la Justice et des Cultes)', 그리고 1848년 5월 11일 알제리 주둔 총사령관(Général Commandant)의 명령으로 설치된 '원주민 민간 행정 특별국(Service spécial de l'Administration Civile Indigène)'은 모두 알제리의 종교시설에 대한 감시와 치안 유지, 성직자 임명 및 급여 지불, 무슬림 예배 비용 및 각종 부대 비용 지출을 담당했다. Carret, "Le problème de l'indépendance," pp. 47-48; Michael Daniel Driessen, "Religiously friendly democracy: Framing political and religious identities in Catholic and Muslim societies" (PhD diss., University of Notre Dame, 2011), p. 223.

23) Alf Andrew Heggoy, "Education in French Algeria: An essay on cultural conflict,"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vol. 17, no. 2 (1973), pp. 180-186; Mann, "Not Quite Citizens," pp. 84-86. 프랑스의 공교육은 주로 유럽인 식민 정착민을 대상으로 했고, 1890년 알제리 무슬림 아동의 취학률은 2%에 불과했다. 이러한 낮은 취학률은 프랑스의 군사적 정복에 패배한 알제리 선주민들이 19세기 내내 프랑스 식 학교교육을 강력히 거부한 데서도 비롯되었다. Heggoy, "Education in French Algeria, pp. 183-186; Chems Eddine Chitour, *Histoire de l'Algérie* (Alger: Chihab Éditions, 2019), p. 134.

되었으며 19세기 말에 이르면 가족법(statut personnel)[24]과 상속법에 한해서만 이슬람 사법권이 허용되었다.[25] 이상의 영역에서 프랑스의 '동화주의'가 철저히 일관되게만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식민지 알제리의 사법과 교육 영역을 이슬람으로부터 분리하고 남은 신앙활동의 영역을 식민 국가의 엄격한 통제 하에 둠으로써 "권위주의적 세속화"를 진척시켰다고 볼 수 있다.[26] 이 중 알제리 선주민의 취학률이 극히 낮았던 학교교육을 제외한다면 식민지 알제리에서 프랑스에 의한 세속화 혹은 라이시테 원칙이 뚜렷하게 문제되었던 분야는 바로 사법과 종교활동의 영역이었다.

프랑스의 정복과 동화 정책을 겪으면서 알제리 무슬림들은 그들의 종교법이 유일하게 효력을 갖는 가정 영역을 아직 식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역으로 여기게 되었다.[27] 그에 따라 이슬람 가족법을 지키는 것은 곧 신앙의 수호이자 무슬림 정체성의 표지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

24) 'statut personnel(아랍어 번역은 al-Ahwal al-Shakhsiyah)'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인 신분' 혹은 '신분법'이지만, 그 내용은 개인의 민사 신분(état civil), 행위능력, 결혼 및 그 해소, 친자관계, 상속 등 가족법 문제를 다루고 있어 '가족법'이라 번역하겠다. 조희선, 「이슬람의 가족법, 여성권리의 시각에서 본 개혁의 가능성-이집트의 가족법 변화를 통한 고찰」, 『지중해지역연구』, 제6권 제1호 (2004), pp. 116-117; Renucci, "Le statut personnel des indigènes," p. 11.

25) Renard Michel, "Expériences musulmanes du droit et de la justice dans le champ religieux en Algérie coloniale," *Histoire de la justice*, vol. 16, no. 1 (2005), p. 145; Abdellatif Hermassi, "Ulamas réformistes et religiosité populaire. Approche sociologique d'un différend tuniso-algérien," *Insaniyat*, no. 31 (2006), https://doi.org/10.4000/insaniyat.9678 (최종검색일: 2023년 6월 28일); Stéphane Papi, "Le contrôle étatique de l'islam en Algérie : un héritage de l'époque coloniale," *L'Année du Maghreb*, no. VI (2010), https://doi.org/10.4000/anneemaghreb.951 (최종검색일: 2023년 6월 28일); 박단, 「프랑스 내 무슬림 차별 기원으로서의 식민주의 유산」, pp. 65-66.

26) Saaïdia, "L'invention du culte musulman." 1830~1914년 동안 프랑스가 알제리에서 가톨릭과 이슬람을 관리한 방식을 연구한 우아실라 사이디아(Oissila Saaïdia)는 19세기 프랑스 국가 특유의 세속화 과정으로서, 국가의 일정한 규율을 받는 '신앙의 표현' 영역, 즉 '예배(Culte)'의 영역으로 종교를 축소시키는 것을 '예배화(Cultualisation)'라고 불렀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 식민 국가가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알제리 이슬람을 '무슬림 예배(Culte musulman)'로 변모시킨 것은 라이시테 원칙과는 상충할지라도 세속화 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27) Heggoy, "Education in French Algeria," p. 183; Koulakssis and Meynier, *L'Emir Khaled*, pp. 45-46.

서 프랑스는 1865년 7월 14일 원로원 결의안(sénatus-consulte)을 통해 알제리 무슬림들에게 이슬람 가족법의 포기를 프랑스 시민권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 그에 따르면 알제리 선주민은 국적상 프랑스인으로 간주되지만 결혼·이혼·상속과 같은 가족법 영역에서 프랑스 민법이 아닌 종교공동체의 율법을 따를 경우 프랑스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28] 이들이 완전한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가족법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한 일련의 '귀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는 나폴레옹 법전으로 일찍이 민법상의 정교분리를 실현한 프랑스가 모든 시민들은 동일한 세속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공화주의적 원칙에 의거해 사법상의 라이시테를 알제리 무슬림들에게 시민적 자격의 요건으로 부과한 것이었다.[29] 하지만 이슬람 가족법은 식민 치하 알제리 무슬림들에게 신앙의 보루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프랑스 시민으로 '귀화'한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30] 그 결과 대부분 '신민(sujet)'의 지위에 남은 알제리 무슬림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부정당한 채 악명 높은 '원주민법(Code de l'Indigénat)'[31]과 특별 형사재판소(Tribunal répressif,

---

28) Weil, "Le statut des musulmans," pp. 100-102.

29) Judith Surkis, *Sex, Law, and Sovereignty in French Algeria, 1830-1930*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9), p. 10.

30) 19세기 말 20세기 초 알제리 무슬림 인구가 300~500만 명에 달했던 데 비해 1865~1919년 간 프랑스 시민으로 귀화한 선주민 무슬림은 1,730명에 불과했으며, 1920년대에는 연평균 40명, 1930년대에는 연평균 157명만이 귀화했다. 1946년 5월 7일에 가서야 알제리 무슬림들은 이슬람 가족법 적용을 유지한 채로 프랑스 시민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Charles-Robert Ageron, *Histoire de l'Algérie contemporaine*, Tome 2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79), p. 316; Andrea L. Smith, "Citizenship in the colony: Naturalization law and legal assimilation in 19th century Algeria," *PoLAR: Political and Legal Anthropology Review*, vol. 19, no. 1 (1996), pp. 41-42; Laure Blévis, "En marge du décret Crémieux. Les Juifs naturalisés français en Algérie (1865 - 1919)," *Archives Juives*, vol. 45, no. 2 (2012), pp. 50-51.

31) '원주민법(Code de l'Indigénat)'은 1830년 이래로 프랑스의 알제리 군정 통치 하에서 선주민들에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처벌 조치들을 1881년에 성문화한 법이다. 이 법은 원래 프랑스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신민' 지위에 있는 '원주민'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범죄행위를 규정하였으며, 그 처벌 권한을 식민 행정관 혹은 치안 판사에게 부여하였다. 원주민법에서 열거한 특별범죄행위는 허가받지 않은 집회와 여행, 무례한 행동, 식민 행정 관리에 대한 불복종 및 불손한 태도, 기타 공공 안녕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이었다.

Cour criminelle)를 비롯한 억압적인 예외적 사법 체제의 적용을 받아야 했다. 결국 종교법과 세속법의 분리라는 법적 라이시테는 대다수 알제리 무슬림들을 프랑스 시민권에서 배제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했다. 여기에 1870년 크레미외 법령(Décret Crémieux)[32]과 1889년 국적법이 각각 알제리 유대인 선주민과 알제리 태생 유럽인 자손들을 프랑스 시민으로 일괄 귀화시킴에 따라 식민지 내에서 여전히 '신민'으로 남아 있는 알제리 무슬림들은 그 열등한 지위가 더욱 공고화되었다.

알제리 무슬림을 배제하는 프랑스 시민권 체제가 확립되어갈 동안 이들의 신앙 활동을 통제하는 식민 국가의 정책은 중앙집권적으로 체계화되었다. 사법과 학교교육에서 분리된 이슬람 신앙활동으로서 식민 당국의 관리 대상이 된 무슬림 예배(Culte Musulman)[33]는 1851년 5월 17일 훈령(circulaire)을 통해 체계화되었는데, 이 훈령은 알제리의 무슬림 종교 시설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프랑스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공식 무슬림 성직자(clergé officiel musulman)" 계서제를 창설했다.[34] 이와 같

이에 해당하는 알제리 신민들은 예심도, 변호도, 소송절차도 없이, 식민 당국의 자의적인 처벌과 통제를 받아야 했다. Weil, "Le statut des musulmans," p. 96; Sylvie Thénault, "Le « code de l'indigénat »," Abderrahmane Bouchène, Jean-Pierre Peyroulou, Ouanassa Siari Tengour and Sylvie Thénault, ed., *Histoire de l'Algérie à la période coloniale* (Paris: La Découverte, 2014), pp. 200-205.

32) 1870년 10월 24일 크레미외 법령(Décret Crémieux)은 알제리 세 도(道, département)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일괄적으로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하였으며 그들의 유대교 가족법 적용을 폐지했다. Laure Blévis, "En marge du décret Crémieux," pp. 55-57.

33) 여기서 'Culte'는 종교 그 자체라기보다 19세기 프랑스의 맥락에서 국가의 일정한 규율을 받는 종교적 실천의 영역으로서 신앙 활동 내지 의례를 가리킨다. 그에 따라 이 글은 'Culte'를 종교의례 전반을 포함하는 '예배'로 번역하고 맥락에 따라 적절한 곳에서 '종교'로 번역하기로 한다. Saaïdia, "L'invention du culte musulman".

34) 1851년 5월 17일 훈령에 따라 식민 국가의 수중에 있는 이슬람 종교 시설은 5개 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슬람 예배를 집전하는 종교 인사들은 '상급' 인사와 '하급' 인사로 나뉘어 차등적으로 보수를 지불받았다. '상급 인사'로 분류된 무슬림 종교 인사는 무프티(mufti, 이슬람 법률 자문가)와 이맘(imam, 모스크에서 예배와 기도를 집전하는 종교 지도자)이었고, '하급 인사'로 분류된 이들은 무다르리스(mudarris, 이슬람 학교 교사), 하잡(hazzab, 쿠란 낭독자), 바슈-하잡

은 '무슬림 성직자(clergé musulman)' 체계는 본래 가톨릭과 달리 별도의 사제계급을 두지 않는 순니파 이슬람에 생경한 제도였다.[35] 알제리 식민 당국과 같이 신앙 활동과 관련된 모든 인사를 국가가 직접 임명하고 그에 보수를 지불하며 공식적인 예배 장소를 지정하는 체계는 당시 프랑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정교협약(政教協約, Concordat) 체제와 닮아 있었다. 1801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교황 비오 7세가 체결한 정교협약은 프랑스 정부가 교황청으로부터 주교임명권을 인정받는 대신 가톨릭을 '프랑스인 다수의 종교'로 인정하고 사제들의 급여 지급과 교구 재정 지원을 책임지도록 만들었다.[36] 본래 정교협약은 가톨릭과 개신교, 유대교를 '공인 종교(cultes reconnus)'로 지정해 국가적인 지원 및 규율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그러한 관리 방식은 곧 식민지 알제리에서 이슬람을 통제하는 정책에도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즉 국가가 '무슬림 성직자'를 임명하고 그들의 보수와 종교 활동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법 이전 알제리 이슬람 관리 체제는 당대인들에 의해 "유사-정교협약"[37] 체제라 불릴 만했다. 그러나 정교협약상 다른 공인 종교들과 달리 알제리의 이슬람은 국가가 인정한 대표교섭기구를 갖추지 못했기에 훨씬 더 종속적이었다. 1870년대 알제리에서 무슬림 예배를 관리하기 위해 생겨난 일련의 기구들은 프랑스 당국에 부속된 행정 조직에 불과했지, 유대교 종무국이나 개신교 장로회의처럼 국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종교적 자치체가 아니었다.[38] 이러한 상황에서 무슬림 예배 예산은

(bach-hazzab, 하잡의 우두머리), 무엣진(mouedden, 이슬람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꾼) 등이었다. Biré, *Étude sur la condition juridique*, p. 184; Carret, "Le problème de l'indépendance," pp. 44, 48.

35) 식민화 이전 오스만 제국 중앙 정부는 현지 알제리 울라마(Ulama: 이슬람 법학자) 중에서 소수의 무프티(고위 이슬람 법률 자문가)만을 임명했을 뿐, 그 외의 종교 인사는 알제리 무슬림들의 자율에 맡겼다. Carret, "Le problème de l'indépendance," pp. 44-45; Driessen, "Religiously friendly democracy," p. 221; Saaïdia, *Algérie coloniale*, pp. 43-45.

36) 정교협약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한동훈, 『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laïcité)의 원칙』, pp. 12-19 참고.

37) Benali Fekar, "La Séparation des Églises et de l'État," *Le Petit Journal*, 1909년 4월 13일.

38) 그 예로 우아실라 사이디아는 1871년에 창설된 '알제 시(市) 및 도(道)의 모스크들에 대한 행정관리 및 감시 위원회(La commission d'administration et de

다른 공인 종교들보다 훨씬 더 적은 액수를 배정받았으며, 수백만 명에 달하는 알제리 무슬림 인구에 비해 공식 성직자와 모스크 숫자는 턱없이 부족했음에도 알제리 독립 때까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39] 따라서 프랑스는 본국의 정교협약 체제에 의거하면서도 식민 질서의 유지를 위해 다른 종교들보다 훨씬 더 국가에 복속된 공식 이슬람(islam officiel)을 알제리에 수립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내내 정교협약 체제에 입각한 프랑스의 알제리 종교 정책은 1905년 12월 9일에 통과된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Loi de la séparation des Églises et de l'État, 이하 '정교분리법')'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게 되었다.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이 법은 프랑스 공화국이 "어떠한 종교(culte)도 공인하지 않고, 어떠한 종교에도 급여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엄숙히 선언하였다.[40] 그에 따라 정교분리법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종교활동 지원 예산을 폐지하였으며, 1901년 결사법에 따라 자유롭게 조직된 종교 결사(association cultuelle)들이 종교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것을 규정하였다.[41] 프랑스 본국에서 정교분리법 제정은 당시 공화국의 존립을 위협하던 가톨릭 세력의 공적·사회적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오랜 반(反)교권주의 투쟁의 결실이었다. 정교분리법이 첨예한 정치적

---

surveillance des mosquées de la ville et du département d'Alger)를 든다. Saaïdia, "L'invention du culte musulman"; idem, *Algérie coloniale*, pp. 89-107.

39) 1879년을 기준으로 알제리의 각 종교 신도 1인당 예배 예산을 비교해보면, 개신교는 1인당 11.08 프랑, 유대교는 0.76프랑, 가톨릭은 2.96프랑, 이슬람은 0.09프랑을 배정받았다. Saaïdia, *Algérie coloniale*, p. 102. 알제리 무슬림 인구는 식민화 이전 300만 명에서 독립 직전 800만 명까지 늘어났지만 공식 무슬림 성직자 숫자는 알제리 독립 때까지 300~500명에 불과했다. Gérard Busson de Janssens, "La séparation du culte musulman et de l'état en Algérie," *Revue des Études islamiques*, vol. 22, no. 1 (1948), p. 14; Mérad, *Le Réformisme musulman en Algérie*, pp. 417-418; Sellam, *La France et ses musulmans*, p. 344; Saaïdia, *Algérie coloniale*, p. 102.

40) "La République ne reconnaît, ne salarie ni ne subventionne aucun culte."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Lois et décrets* (이하 *JOLD*), 1905년 12월 11일, p. 7205.

41) *JOLD*, 1905년 12월 11일, pp. 7206-7208; 한동훈, 『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laïcité)의 원칙』, pp. 24-27.

갈등을 배경으로 했던 만큼 그 법은 서로 대립하는 사회 세력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타협'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었다.[42] 그 결과 최종적인 1905년 법안은 종교와 공적 영역 간의 철저한 분리보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 보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자유주의적인 형태로 제정되었다.[43] 만약 이 법이 식민지 알제리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그것은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이슬람 신앙 활동 통제에 일대 변화를 갖고 올 것이었다. 실제로 알제리 선주민에 우호적인 언론인 빅토르 바뤼캉(Victor Barrucand)은 정교분리 조치가 "알제리 선주민들에게 후부스를 반환하는 조건 하에서라면 그들에게 해방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환영하기도 했다.[44] 즉 알제리 무슬림들은 본국 프랑스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만들어진 정교분리법을 이용해 식민 당국의 구속에서 벗어난 보다 독립적인 종교 활동 전망을 타진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장밋빛 전망에는 곧 제동이 걸렸다. 정교분리법 제43조 제2항은 해당 법이 "알제리와 식민지들에 적용될 조건은 공공행정규칙이 정할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그에 따라 제정된 1907년 9월 27일 정교분리법 시행령(décret)은 식민 당국이 정교분리 '원칙'을 우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과연 식민지에도 정교분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상원에서 처음 제기된 이래로,[45] 정교분리법의 식

---

42) 프랑스에서 라이시테의 제도화가 1801년 정교협약 체결 이래로 매 순간 타협을 통해 구축되었음은 Christophe Bellon, "France laïque, fille de compromis," *Etudes*, no. 2 (2019) 참고.

43) Gérard Unger, "Les débats parlementaires lors de la loi de 1905," *Matériaux pour l'histoire de notre temps*, vol. 78, no. 1 (2005), pp. 9-15; Jean Baubérot, "Une laïcité conviviale," *Revue du MAUSS*, vol. 43, no. 1 (2014), pp. 194-196; Bellon, "France laïque," pp. 59-61.

44) 빅토르 바뤼캉은 1904년 5월 29일에 자신의 신문 『아크바르(L'Akhbar: 아랍어로 '뉴스'라는 뜻)』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Charles-Robert Ageron, *Les Algériens musulmans et la France (1871-1919)*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8), p. 894.

45) 하원에서 정교분리법은 철저히 본국 프랑스의 맥락에서 가톨릭과 공화국 간의 대립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반면, 상원에서는 정교분리법의 식민지 적용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상원에서 정교분리법의 알제리 적용 문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논쟁에 관해서는 Oissila Saaïdia, "L'anticléricalisme article d'exportation? Le cas de l'Algérie avant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vol. 87, no. 3 (2005), pp. 107-110 참고.

민지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안팎으로 꾸준히 개진된 결과였다.[46] 그리하여 알제리 총독부의 의안을 바탕으로 국사원(Conseil d'État)과 내무부의 수정을 거쳐 제정된 1907년 9월 27일 정교분리법 시행령은 식민 정부가 더 이상 무슬림 사제를 직접 임명하거나 그들에게 급여(traitement)를 지불할 수는 없지만,[47] "그럼에도, 정부가 의결한 법령에 의해 결정된 구역(circonscription)에서는 총독이 국민적이고 공적인 이익을 위해, 그에 의해 지명[48]되었으며 행정 명령 규정을 준수해 공공 예배를 거행하는 사제들에게 일시적인 직무수당(indemnité de fonction)을 지급할 수 있다"(시행령 제11조 제6항)[49]고 규정했다. 바로 이 '직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성직자가 종교 결사에 의해 지명되어 당국의 "품행 조사(enquêtes de moralité)"를 거쳐 알제리 총독의 승

---

46) 본국과 달리 식민지 알제리에서는 가톨릭과 세속 당국이 서로 우호적이었으며 가톨릭의 영향력이 곧 프랑스의 영향력과 등치되었기에 알제리 가톨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무슬림 예배의 경우에는 안보적 목적에서 프랑스 국가의 통제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존재했다. 하지만 가톨릭 측은 식민지의 특수성을 이유로 무슬림 예배만 정교분리법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부당한 특혜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당시 가톨릭의 입장에서 정교분리법의 알제리 적용을 반대한 대표적인 글은 René Pinon, "La Séparation des Églises et de l'État en Algérie," *Revue des Deux Mondes*, 5e période, vol. 42, no. 4 (1907). 알제리 가톨릭의 여론을 포함해 프랑스 정부 안팎에서 나타난 정교분리법의 식민지 적용 반대 의견에 관해서는 Raberh Achi, "Laïcité d'empire: Les débats sur l'application du régime de séparation à l'islam impérial," Patrick Weil, ed., *Politiques de la laïcité au XXe siècl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7), pp. 240-252, 254-259; Saaïdia, *Algérie coloniale*, pp. 273-292 참고.

47) 이러한 측면에 주목해 제임스 맥두걸(James Mcdougall)은 정교분리법이 알제리에서 '사문화'되었다는 해석을 거부하고, 이 법으로 인해 이슬람에 대한 식민 당국의 공식적 통제가 비공식적 통제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James McDougall, "The secular state's Islamic empire: Muslim spaces and subjects of jurisdiction in Paris and Algiers, 1905-1957,"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52, no. 3 (2010), pp. 560-562.

48) 여기서 '지명'의 의미는 종교 사제가 알제리 총독에 의해 임명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직무수당 수령인'으로 지명되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당시 프랑스 수상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는 1909년 7월 13일 훈령을 통해 알제리 총독에게 정교분리법 시행에 따라 식민 정부가 종교 사제를 직접 임명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Carret, "Le problème de l'indépendance," pp. 49-50; McDougall, "The secular state's Islamic empire," p. 562.

49) *JOLD,* 1907년 9월 30일, p. 6838.

인을 받아야 했다.[50] 이론적으로 직무수당을 받지 않는 성직자는 식민 당국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웠지만, 실제로 추후 설립된 알제리 무슬림 종교 결사는 직무수당 수령 성직자들만을 관리했다.[51] 게다가 본래 자유롭게 조직되어야 할 종교 결사 역시 알제리에서는 식민 당국과 친화적인 무슬림 종교 결사만이 허가되었다.[52] 결국 식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알제리 총독은 직무수당 지급 권한을 매개로 무슬림 종교 인사들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식민 국가의 지배력은 당국에 순종적인 종교 결사 설립과 함께 무슬림 예배 활동에 대한 엄격한 감시 및 단속 조치를 통해 뒷받침되었다.[53] 아울러 본래 10년 기한의 한시적 조치로 규정된 직무수당 지급 조항[54]은 그 기한이 만료될 때마다 새로운 시행령을 통해 거듭 연장됨으로써 식민 국가의 종교 활동 통제를 알제리 독립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장했다.[55]

20세기 초 식민지 알제리에 적용된 라이시테 정책은 1905년 정교분리법의 불완전한 시행으로 그 모순이 명징하게 드러났다. 한편으로 프랑스는 알제리 선주민들에게 법적 라이시테 준수를 시민적 자격의 전제로 요구함으로써 이들을 시민권에서 배제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교분리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해 예배의 자유 보장이라는 또 다른 가치의 라이시테 원칙을 부정하였다. 전자가 종교와 공적 영역 간의 분리라는 '의무로

50) Achi, "Laïcité d'empire," p. 262; Saaïdia, "L'invention du culte musulman".
51) Saaïdia, "L'invention du culte musulman".
52) Mcdougall, "The secular state's Islamic empire," pp. 563-564; Saaïdia, "L'invention du culte musulman."
53) Achi, "Laïcité d'empire," pp. 260-262; Saaïdia, "L'invention du culte musulman". 게다가 무슬림 신민을 옭아매는 원주민법은 식민 당국이 지정한 예배 장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했다. Raberh Achi, "A Counter-History of Laïcité: France and Islam in 1905," *Political Theology*, vol. 22, no. 2 (2021), p. 132.
54) 1907년 9월 27일 정교분리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따르면 직무수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1,800프랑을 넘지 못하며, 현 시행령의 공포 시점으로부터 10년의 기간을 넘어서 유지될 수 없"었다. *JOLD,* 1907년 9월 30일, p. 6838.
55) 1907년 시행령의 직무수당 지급 조항은 1917년 9월 19일 시행령, 1922년 8월 31일 시행령, 1932년 9월 25일 시행령을 통해 계속 연장되었으며, 비시(Vichy) 정부 치하 1941년 5월 19일 시행령을 통해 무기한 연장되었다. 이 조항은 알제리 독립 때까지 적용되었다. Achi, "Laïcité d'empire," p. 259; Mcdougall, "The secular state's Islamic empire," p. 561.

서의 라이시테'를 무슬림들에게 부과한 것이라면, 후자는 이 무슬림들에게 보장해야 할 자유로운 신앙 활동, 즉 '권리로서의 라이시테'를 박탈한 정책이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알제리에서 정교분리법의 사문화를 주도한 식민 당국이 무슬림들의 지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혁안에는 정확히 '라이시테'를 이유로 들어 반대했다는 점이다.[56] 이슬람 가족법을 포기하지 못하는 알제리 무슬림들의 현실을 감안해 이들에게 종교적인 가족법을 보전한 채로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19세기 말부터 제기되었으나, 알제리 식민 정부는 "법과 교회 간의 결정적 분리"라는 프랑스 공화국의 법적 전통을 환기하며 사법상의 라이시테를 완화하려는 모든 종류의 시도를 단호히 반대했다.[57] 이상의 모순적인 라이시테 정책 이면에는 식민지 안보의 논리가 자리하고 있었다. 법적 라이시테의 부과와 예배의 자유 부정을 동시에 정당화하는 안보의 논리는 1913년 12월 26일 알제리 식민정착민 하원의원 에밀 브루세(Émile-Octave Broussais)의 대정부질의 연설에서 명확하게 표현되었다.

> "그들[알제리 무슬림]의 종교적 신앙이 여전히 심원하고 그들에게서 성(聖)과 속(俗)의 분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칼리파(khalifa)가 종교적 지도자인 동시에 무슬림들의 술탄, 왕, 황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 이유로 인해 이러한 선전[범이슬람주의 선전]은 위험하며 우리는 알제리 행정부에게서 우리의 신민인 알제리 무슬림들의 충성이 빗나가지 않도록 막는 수단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58]

그에 따르면 무슬림은 "성과 속의 분리가 존재하지 않"는 정교일치적

---

56) Todd Shepard, "Algerian nationalism, Zionism, and French laïcité: A history of ethnoreligious nationalisms and decolon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vol. 45, no. 3 (2013), p. 452.

57) 1916년 1월 알제리 총독 샤를 뤼토(Charles Lutaud)는 내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Renucci, "Le statut personnel des indigènes," pp. 181-182, 195-196.

58)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Débats parlementaires. Chambre des députés* (이하 *JODC*), 1913년 12월 26일, p. 4119.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지도자인 칼리파(Khalifa)를 그들의 “술탄, 왕, 황제”로 간주한다. 따라서 알제리 무슬림들은 아무리 본국에 충성스럽다 할지라도 이슬람 세계에서 발전하고 있는 범이슬람주의 선전에 취약하다. 그러므로 이들의 충성을 프랑스에 묶어두기 위해 “교회와 국가 간의 분리가 결코 완전하지 않”은 지금의 알제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59] 결국 이슬람 신앙의 정교일치적 성격을 근거로 무슬림을 ‘위험’한 집단으로 보는 안보적 시각은 법적 라이시테를 전제로 한 프랑스 시민권에서 이들의 배제를 정당화했고, 다시 이들의 위험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신앙활동상의 라이시테를 부정하는 논리를 완성했다. 그 결과는 곧 ‘의무로서의 라이시테’를 부과하고 ‘권리로서의 라이시테’를 빼앗는 식민지 라이시테의 자기분열상이었다.

59) *JODC*, 1913년 12월 26일, pp. 4119-4120.

Ⅲ. ‘청년 알제리인’ 운동의 선주민 권리 확대 요구

1908년 1월 1일부터 알제리에 적용되기 시작한 정교분리법은 선주민 무슬림들 사이에서 불안과 우려를 자아냈다. 비록 식민 당국은 정교분리법 시행 직후 선주민들의 반응을 두고 “주의를 환기할 만한 일도, 염려할 일도 없다”고 평가했으나,[60] 이 법이 무슬림 사회를 술렁이게 한 중대한 문제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1905년 정교분리법 통과 이후 알제리 무슬림 명사들은 해당 법을 근거로 무슬림 예배 예산을 현저히 감축한 데 맞서 항의하였고,[61] 1908년 알제리 총독에게 프랑스가 알제리 무슬림들의 후부스 재산을 전부 몰수한 만큼 “우리의 예배” 유지에 재정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2] 만약 정교분리법에 따라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면, 프랑스는 무슬림들이 모스크를 유지하고 종교의례를 거행할 수 있도록 후부스를 반환해야 할 터였다. 하지만 당시 알제리 총독 조나르(Charles Jonnart)는 이들의 청원에 반박하는 답신을 보냄으로써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가 이슬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1830년 항복협정은 이미 그동안 일어난 무슬림들의 반란으로 무효화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프랑스가 선주민들로부터 몰수한 후부스의 가치를 초과하여 무슬림 예배 비용을 부담해왔다는 것이다.[63] 이는 정교분리법에 의거해 제기될 수 있었던 후

60) 우아실라 사이디아에 따르면, 현재 이용 가능한 문서고에서 알제리 선주민들이 정교분리법 시행에 보인 반응을 기록한 식민 당국의 보고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례로 1908년 3월 23일 경찰 보고서는 정교분리법과 관련해 선주민들이 “아무런 항의도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예배 위원회(commission du culte) 구성원인 동료 무슬림을 비난하는 것 외에는 주의를 환기할 만한 일도, 염려할 일도 없다”고 보고했다. Saaïdia, *Algérie coloniale*, pp. 298-299.

61) Ageron, *Les Algériens musulmans et la France*, pp. 894-895; Jacques Bouveresse, *Un parlement colonial? Les délégations financières algériennes 1898-1945* (Mont-Saint-Aignan: Publications des universités de Rouen et du Havre, 2008), pp. 724-731.

62) Ageron, *Les Algériens musulmans et la France*, p. 895.

63) Michel, “Expériences musulmanes du droit,” pp. 151-152; Saaïdia, *Algérie*

부스 반환 요구를 단호히 물리치는 처사였다. 그에 따라 무슬림 명사들은 적극적인 저항 대신 정교분리법 시행령이 규정한 종교 결사 설립에 부심했지만,[64] 결국 이 법이 무슬림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는 종교 재정 기반을 박탈해 알제리의 탈이슬람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광범위하게 남아 있었다.

정교분리법 시행 직후 알제리 무슬림들의 반응은 틀렘센(Tlemcen) 출신 선주민 지식인인 벤 알리 파카르(Ben Ali Fekar)가 남긴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1909년 당시 프랑스의 선주민 징병제 도입 시도와 정교분리법 시행이 공교롭게도 동시에 일어남에 따라 무슬림 주민들 사이에서 커다란 두려움이 생겨났다고 논평했다.[65] 그에 따르면 선주민 무슬림들은 프랑스 본국에서 정교분리법이 만들어진 특수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와 국가 간의 분리'를 이슬람 신앙에 대한 증오와 공격으로 간주하였다.[66] 이러한 여론의 동향은 향후 1911년 틀렘센에서 일어난 알제리 선주민들의 대규모 탈출(exode) 현상을 낳은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67] 그런데 벤 알리 파카르의 논평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그가 무슬림 지식인으로서 대중의 반응과는 다르게 정교분리법이 궁극적으로 무슬림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 전망했다는 데 있다.[68] 프랑스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리옹 상공회의소의 아랍어 교수로 재직한 그는 정교분리를 포함한 프랑스 공화국의 법제도에 보다 전향적

---

coloniale, pp. 299-300.

64) 1908년 8월 후부스 반환을 위한 소송 기금 조성 활동이 보고되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항의는 예외적인 것으로 남았고, 알제리 무슬림 명사들은 1907년 정교분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대로 당국의 일정한 규제 하에 무슬림들이 자율적으로 종교 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종교 결사 조직에 부심했다. Saaïdia, *Algérie coloniale*, p. 300.

65) Benali Fekar, "La répresentation des musulmans Algériens," *Revue du monde musulman*, vol. VII, no. I-II (1909), p. 1.

66) Fekar, "La répresentation des musulmans Algériens," p. 2.

67) Gouvernement Général de l'Algérie, *L'Exode de Tlemcen en 1911* (1914), p. 18; El Hassar, "Les « Jeunes Algériens »," p. 152. 1911년 틀렘센 무슬림들의 대규모 탈출 현상에 관한 상세한 연구로는 Charles-Robert Ageron, "Les migrations des musulmans algériens et l'exode de Tlemcen (1830-1911)," *Annales. Economies, sociétés, civilisations*, vol. 22, no. 5 (1967) 참고.

68) Fekar, "La répresentation des musulmans Algériens," p. 2.

인 시각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다.[69] 그의 견해는 대다수 알제리 무슬림들의 찬동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와 같은 근대적인 선주민 지식인의 등장은 무슬림의 입장에서 정교분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예고했다.[70]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르면 알제, 틀렘센, 콩스탕틴 등 알제리의 주요 도시들에서 벤 알리 파카르와 같이 프랑스 식 교육을 받고 서구 사상을 수용한 무슬림 지식인 집단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신흥 알제리인 엘리트들은 주로 도시에서 새롭게 성장한 중소 부르주아 출신으로서 비록 1천 명 가량의 소수 지식인 집단이었지만,[71] 1880년대부터 각종 클럽과 협회를 창립하고 언론을 창간해 그동안 정치 무대에서 배제되었던 알제리 선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시작했다.[72] 이는 19세기 내내 프랑스

---

69) El-Hadi Chalabi, "Un juriste en quête de modernité: Benali Fekar," Aïssa Kadri, ed., *Parcours d'intellectuels maghrébins: scolarité, formation, socialisation et positionnements* (Paris: Karthala, 1999), p. 168; El Hassar, "Les « Jeunes Algériens »," pp. 122-123.

70) 정교분리법에 관한 벤 알리 파카르의 또 다른 논평으로는 "La Séparation des Églises et de l'État," *Le Petit Journal*, 1909년 4월 13일 참고. 이 기사에서 파카르는 정교분리법에 대한 무슬림 대중의 우려를 설명하면서 프랑스가 이 법을 무슬림 예배에 적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파카르 자신이 정교분리법의 의의를 이해하고 있던 것과는 별개로 무슬림 대중의 여론을 감안해 식민 당국이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을 조언한 것이었다.

71) Koulakssis and Meynier, *L'Emir Khaled,* pp. 49-50; Ageron, "Le mouvement Jeune-Algérien," p. 114; Kaddache, *Histoire du nationalisme algérien*, p. 72; Mann, "Not Quite Citizens," p. 146. 기존 연구들은 청년 알제리인 운동의 규모를 최대 1,000~1,200명으로 추산한다. 프랑스 식 학교나 공식 마드라사(madrasa: 이슬람 중등교육 기관)에서 수학한 이 지식인들은 의사, 변호사와 같은 자유직업인도 소수 존재했으나 대부분 소상공인, 사업가, 초등학교 교사, 공무원, 통역관, 공증인 등 중소 부르주아 직군에 종사했다.

72) 1880년대부터 알제리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클럽과 협회들은 1901년 결사법의 통과로 급증했다. 이 시기 무슬림들은 식민지에 적용된 '결사의 자유'를 십분 활용하여 친목회, 공제조합, 스포츠클럽, 극단, 교육·문화·자선단체, 그리고 1905년 정교분리법 시행에 따른 종교 결사(association cultuelle) 등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를 조직했다. 이와 함께 알제리 선주민들의 언론 역시 주요 도시들에서 생겨났는데, 1893년 본(Bône)에서 『엘-학(El-Hack: 아랍어로 '진실', '권리' 의미)』, 1904년 오랑(Oran)에서 『엘-미스바흐(El-Misbah: 아랍어로 '등불' 의미)』, 1909년 본(Bône)에서 『이슬람(L'Islam)』, 그리고 1911년 지젤(Jijel)에서 『라시디(Le Rachidi: 아랍어로 '지도(指導)', '정도(正道)' 의미)』 등이 창간되었다. Bouveresse, *Un parlement colonial?*, p. 839; Omar Carlier, "Medina and modernity: the

에 맞서 전개된 무슬림들의 무장 반란이 강경하게 진압된 이후 근대적인 사상과 행동 수단으로 무장해 새롭게 대두한 선주민 정치 운동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 일단의 느슨한 지식인 집단은 당시 이슬람 세계에서 흥기하고 있던 청년 투르크인 운동, 청년 튀니지인 운동, 청년 이집트인 운동 등과 같이 '청년 알제리인(Jeunes-Algériens)' 운동이라고 불렸다.[73] 곧 스스로도 자신들을 '청년 알제리인'이라 일컬은 이 지식인들은 억압적인 식민 체제의 개혁을 추구하면서 알제리 무슬림들의 권리 확대와 프랑스 시민들과의 평등한 대우 보장을 요구했다.

청년 알제리인 운동의 정치강령은 1912년 알제리에 도입된 선주민 징병제를 둘러싸고 명확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20세기 초 열강들 간에 고조되는 군사 경쟁에 대처하고자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프랑스 시민들만이 부담해온 병역 의무를 알제리 '신민'에게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74] 이 선주민 징병제 소식에 청년 알제리인 지식인들은 공화국의 징병에 응하는 대가로 알제리 신민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요구하고자 결집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무슬림 주민들이 프랑스의 징병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75] 이 근대주의적 지식인

---

emergence of Muslim civil society in Algiers between the two World Wars," Zeynep Celik, Frances Terpak and Julia Clancy-Smith, ed., *Walls of Algiers: Narratives of the City Through Text and Image* (Los Angeles: Getty Research Institute;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9), pp. 64-67; Julien Fromage, "L'expérience des «Jeunes Algériens» et l'émergence du militantisme moderne en Algérie (1880-1919)," Bouchène, Peyroulou, Tengour and Thénault, ed., *Histoire de l'Algérie à la période coloniale*, p. 241.

73) Rabah Aissaoui, "'Between Two Worlds': Emir Khaled and the Young Algerians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in Algeria," Rabah Aissaoui and Claire Eldridge, ed., *Algeria Revisited: History, Culture and Identity*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2017), p. 58. '청년 알제리인'이라는 용어는 원래 프랑스화된 알제리 유대인 집단을 지칭했으나, 1890년대부터 서구식 교육을 받고 식민 체제 개혁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근대적인 무슬림 지식인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 Ageron, "Le mouvement Jeune-Algérien," pp. 107-111; Michelle Mann, "The Young Algerians and the Question of the Muslim Draft, 1900-14," Aissaoui and Eldridge, ed., *Algeria Revisited*, p. 52.

74) Mann, "The Young Algerians," pp. 43-44; Hassett, *Mobilizing Memory,* p. 25.

75) 알제리 선주민 징병제 소식에 대한 무슬림들의 초창기 반응에 관해서는 Mann, "The Young Algerians," p. 40; idem, "Not Quite Citizens," pp. 173-180 참고.

들은 병역 의무와 시민권을 불가분하게 결합한 프랑스 특유의 혁명적 공화주의 전통에 기대를 걸었다.[76] 190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선주민 징병제 논의에 대응하여 청년 알제리인 지식인들은 1908년~1912년 동안 본국과 식민 정부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출했다. 프랑스 시민과 알제리 선주민 간의 평등한 징병제 실시, 식민 행정부의 부패 척결, 원주민법과 같이 알제리 선주민에게만 적용되는 예외적 체제의 폐지, 공평한 과세, 평등한 예산 분배, 선주민의 공직 접근권 확대, 알제리 지방의회와 본국 프랑스 의회에서 유효하고 실질적인 선주민 대표권 확대, 무슬림 "지식인(intellectuels)"들의 투표권 확대, 그리고 군복무한 알제리 신민의 프랑스 시민권 취득 절차 간소화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77] 이는 곧 알제리 신민들이 프랑스 시민들과 동등한 병역 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억압적인 예외적 체제에서 벗어나 프랑스 시민들과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다만 이 시기 '청년 알제리인'들의 요구안에서 정교분리법과 관련된 내용은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그 점에서 1911년 4월 24일 알제의 선주민 시의원 오마르 부데르바(Omar Bouderba)가 알제리 총독에게 한 연설은 특기할 만하다. 1908년 선주민 징병제 문제에 대응하고자 파리로 파견된 청년 알제리인 대표단[78]을 이끌기도 했던 부데르바는 1911년 당

76) 시민권과 군복무를 긴밀하게 연관시키는 프랑스 공화주의 이념에 관해서는 Hassett, *Mobilizing Memory*, pp. 21-22 참고.

77) Aissaoui, "'Between Two Worlds'," pp. 59-60; Mcdougall, *A History of Algeria*, pp. 148-149; Koulakssis and Meynier, *L'Emir Khaled*, pp. 72-73. 청년 알제리인 지식인들은 1911년에 신임 알제리 총독 뤼토(Charles Lutaud)에게 식민체제 개혁과 선주민 권리 확대를 위한 12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며, 1908년과 1912년 두 차례에 걸쳐 파리에 대표단을 파견해 프랑스의 징병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선주민들의 권리를 확대해 줄 것을 본국 정부에 직접 요구하였다. 특히 1912년 청년 알제리인 대표단이 제출한 '청년 알제리인 선언(Manifeste Jeune Algérien)'에 관해서는 *L'Islam*, 1912년 6월 23일; Collot and Henry, *Le Mouvement national algérien*, p. 24 참조.

78) 1908년 10월 오마르 부데르바가 이끈 청년 알제리인 대표단은 파리에서 당시 수상 클레망소를 접견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확대 없는 선주민 징병제 실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Charles-Robert Ageron, "Clemenceau et la question coloniale," Société des amis de Georges Clemenceau, ed., *Clemenceau et la justice* (Paris: Publications de la Sorbonne, 1983), p. 79; Mcdougall, *A History of Algeria*, p. 149.

시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샤를 뤼토(Charles Lutaud)에게 알제리 선주민을 위한 개혁 정책을 호소하면서 “무슬림 교권주의(cléricalisme musulman)”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 “총독 각하를 파견한 정부[프랑스 정부]는 세속주의적 기풍(l'ésprit laïque)을 확립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그 기풍이 알제리에도 똑같이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알제리 행정부는 선주민들을 지배하기 위해 여전히 무슬림 교권주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험성에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 성직자가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을 동시에 행사하는 것은 위험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견지에서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주민들이 그들의 자유로운 경제적 발전을 구속했던 종교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79]

부데르바가 지적한 ‘무슬림 교권주의’는 정교분리법 적용 이후에도 여전히 식민 당국에 종속되어 선주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무슬림 성직자들의 행보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들을 규탄하기 위해 프랑스 공화국의 세속주의 기조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부데르바의 모습은 정교분리 문제가 아직 청년 알제리인 운동의 명확한 정치 강령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을지라도 당시 무슬림 지식인들의 시야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은 중대한 개혁 의제였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후일 부데르바의 위 연설은 “레지옹 도뇌르 5등 수훈자(chevalier)이며 압델카데르의 손자인 에미르 칼레드(Emir Khaled), 도매상인이자 알제 시의원인 오마르 부데르바(M. Omar Bouderba), 의사 벤타미(M. le docteur Bentami)”[80] 세 명의 공저로 1914년 알제에서 출간된 소책자 『알제리 선주민 정책에 관한 질의(Interpellation sur la politique indigène en Algérie)』(이하 『질의』)에서도 자세히 다루어졌다.[81] 『질의』는 1913년

---

79) *Les Nouvelles*, 1911년 4월 25일.
80) *La République du Var*, 1914년 3월 1일; *L'Islam*, 1914년 3월 19일.
81) Emir Khaled, Omar Bouderba and Docteur Bentami, *Interpellations sur la*

12월 26일 알제리 식민정착민 하원의원 에밀 브루세가 알제리 선주민 정책에 관한 대정부질의에서 연설한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여기서 세 저자들은 부데르바의 반교권주의적 입장이 당시 알제리 무슬림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음을 명확하게 밝혔다.[82] 그에 따르면 부데르바의 1911년 연설은 친(親)식민 진영의 격렬한 반발을 샀으나 소위 "선주민 언론"으로부터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았으며, 1912년 5월 알제 시의회 선거에서 무슬림 선거인들이 "브루세 씨와 알제리 행정부에 그토록 소중한 무슬림 성직자들의 술책에 반대"하여 부데르바 측 후보 명부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결과로 이어졌다.[83] 이러한 지지가 부데르바의 세속주의적 입장을 전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84] 최소한 식민 체제 개혁을 바라는 무슬림들 사이에서 식민 권력에 굴종적인 '공식 이슬람'을 비판하는 데 프랑스 공화국의 라이시테 이념이 활용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85]

부데르바와 함께 1914년 소책자 『질의』를 출간한 이들 중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바로 에미르 칼레드(Emir Khaled)이다. 그는 향후 청년 알제리인 운동의 대표적 지도자로 부상해 알제리 민족운동사상 최초로 '정교

Politique Indigène en Algérie - Mise au point et précisions En Réponse au Discours de Mr. Broussais (Alger: Imprimerie Gojosso, 1914), pp. 3-5.

82) 알제 지역구 하원의원 에밀 브루세는 1911년 당시 알제리 선주민 언론이 부데르바를 배교자로 취급했음을 언급하면서 그와 같은 청년 알제리인 지식인들이 무슬림 주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JODC*, 1913년 12월 26일, p. 4115. 1911년 부데르바의 연설에 대한 당시 알제리 선주민들의 찬반 입장은 *Les Nouvelles*, 1911년 6월 10일; idem, 1911년 6월 25일 참고.

83) Khaled, Bouderba and Bentami, *Interpellations sur la Politique Indigène*, pp. 4-5. 1912년 알제리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청년 알제리인' 무슬림 시의원은 총 9명이었다. Ageron, "Le mouvement Jeune-Algérien," p. 114.

84) 오마르 부데르바는 프랑스 시민으로 귀화한 무슬림이자 프리메이슨으로서 강경한 반교권주의 입장을 표방했다. 따라서 '종교로부터의 해방'까지 주장하는 그의 입장이 알제리 무슬림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대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Ageron, "Le mouvement Jeune-Algérien," pp. 116, 122.

85) 『질의』는 알제리 식민 정부가 무슬림 종교 인사들을 매수해 청년 알제리인 대표단의 활동을 방해하도록 공작했다는 사실도 폭로하였다. 이를 두고 『질의』의 저자들이 "알제리 행정부가 가장 공공연한 광신도들을 후원하고 있다"고 규탄한 대목은 라이시테가 청년 알제리인들에게 비판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Khaled, Bouderba and Bentami, *Interpellations sur la Politique Indigène*, p. 10.

분리법의 완전한 적용'을 명시적인 강령으로 제시할 인물이었다. 1832~1847년 동안 프랑스의 침공에 맞서 싸운 전설적인 알제리 저항 지도자 에미르 압델카데르(Emir Abd al-qadir, 'Emir'는 아랍어로 '군주' 혹은 '군사령관'을 의미)의 손자인 그는 청년 알제리인 운동 속에서 근대주의적 지향과 무슬림 정체성 양자의 "종합"을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대표했다.[86] 1875년 다마스쿠스에서 태어나 1892년 가족과 함께 알제리에 정착한 칼레드는 프랑스 정부의 후원을 받아 루이 르 그랑 고등학교와 생시르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다.[87] 본래 알제리 신민이 생시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려면 졸업하기 전에 프랑스 시민으로 귀화해야 했지만, 칼레드는 장교로 임관한 후에도 "내 종교와 가족의 상황이 귀화를 요구할 수 없게 한다"며 이슬람 가족법 적용을 고수했다.[88] 그에 따라 당시 전례가 없었던 '원주민' 신분의 장교로 대위까지 승진한 칼레드는 1907~1909년 모로코 원정과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군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당국의 끊임없는 불신과 차별에 시달렸다.[89]

칼레드가 청년 알제리인 운동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것은 1913년부터였다. 이 시기 그는 프랑스군으로부터 전투 참여를 거부당해 휴가를 내고 알제로 돌아와 주요한 청년 알제리인 운동 인사들과 교류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1913년 봄 알제리 예산 심의 기구인 재정대표단(Délégations financières algériennes)[90] 선거에서 칼레드는 알제 도 무슬림 종교 결사

---

86) Fromage, "L'expérience des «Jeunes Algériens»," p. 240.

87) 압델카데르는 1847년 프랑스에 항복한 이후 투옥과 망명을 거쳐 1855년 다마스쿠스에 정착했다. 이곳에서 그는 오스만 제국 내 알제리인 공동체를 지도하면서 프랑스 영사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다. 이는 과거의 저항 지도자를 포섭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한 프랑스의 전략에 부응한 결과였다. 1883년 압델카데르가 사망하자 프랑스는 그 가족들에게 8만 프랑의 연금을 지급하였으며, 칼레드의 부친 알-하시미(El-Hachemi)가 오스만 제국으로의 귀화를 거부하고 가족과 함께 1892년 알제리로 돌아오는 것을 지원하였다. 이 같은 프랑스의 후원과 감시 하에 칼레드는 장학생 신분으로 프랑스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Koulakssis and Meynier, *L'Emir Khaled*, pp. 54-60.

88) Koulakssis and Meynier, *L'Emir Khaled*, pp. 60-67; Aissaoui, "'Between Two Worlds'," p. 63.

89) 칼레드가 프랑스군으로부터 받은 의심과 차별 대우에 관해서는 *L'Islam*, 1914년 3월 5일; idem, 1914년 4월 9일 참고.

90) 재정대표단은 1898년 8월 23일에 창설된 알제리 예산 심의 기구로서, 1900년부

의 회장이자 친(親)식민 인사인 벤 시암(Si Ahmed Ben Siam)에 맞서서, 다른 청년 알제리인 인사들과 함께 제룩 마히엣딘(Zerrouk Mahieddine)을 지지하였다.[91] 이 정치활동으로 인해 그는 알제리 식민 정부로부터 연금을 박탈당했지만,[92] 그에 굴하지 않고 1913년 말부터 선주민 신문『이슬람(L'Islam)』을 통해 '청년 알제리인 운동'을 지지하는 언론 활동을 이어나갔다.[93] 당시 알제리 식민정착민 측 언론은 청년 알제리인 지식인들을 두고 무슬림들에게 "광신과 미신"을 퍼뜨리려는 "종교적 선동가"에 불과하다고 폄하했으나,[94] 칼레드는 이 "선주민 지식인"들이 무슬림의 부흥과 프랑스의 이익 모두를 위해 투쟁하는 이들이라 옹호하며 프랑스 공화국이 이들의 대의에 귀를 기울일 것을 호소하였다.[95]

그러한 호소를 집약한 칼레드의 첫 저작은 1913년 12월에 출간된『알제리에서 프랑스-아랍 간의 화해에 관한 고찰(Réflexions sur le rapprochement franco-arabe en Algérie)』(이하『화해』)이었다.『화해』는 알제리에서 식민자와 피식민자 간의 진정한 '화해'를 이룩하기 위해 프랑스 공화국이 자신의 이념에 걸맞게 알제리 선주민들에게 정의와 평등을 실현해 줄 것을 호소했다. 칼레드가 보기에 지금의 알제리 체제는 유럽인 정착민을 위한 특권과 불평등으로 얼룩져 있었다. "가장 비옥한 유럽

터 자율권을 부여받은 알제리 예산을 표결하여 일종의 식민지 의회 역할을 했다. 총 69명의 재정대표 중 48명이 알제리 유럽인 정착민 측 대표로 선출되었고, 나머지 21명은 '원주민' 측 대표로서 아랍 대표 9명, 카빌리(Kabylie) 지역 대표 6명, 남부 영토(territoire du Sud) 대표 6명으로 구성되었다. Vincent Confer, *France and Algeria: the Problem of Civil and Political Reform, 1870 - 1920*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1966), p. 35.

91) Koulakssis and Meynier, *L'Emir Khaled*, p. 76; Zack, "Early origins of Islamic activism," p. 209.

92) Koulakssis and Meynier, *L'Emir Khaled*, p. 76. 칼레드는 '청년 알제리인' 운동과 함께 한 정치활동을 이유로 알제리 예산에서 지급되는 2,800 프랑의 수당을 박탈당했다. *La République du Var*, 1914년 4월 12일; *L'Islam*, 1914년 4월 23일.

93) Ihaddaden Zahir, *Histoire de la presse indigène en Algérie: des origines jusqu'en 1930* (Alger: ENAL, 1983), pp. 221, 223-224. 신문『이슬람』은 당시 알제리에서 가장 많이 읽힌 선주민 언론이었다. 이 신문에서 칼레드가 청년 알제리인 운동에 대한 지지를 밝힌 주요 기사는 *L'Islam*, 1914년 2월 5일; idem, 1914년 3월 5일; idem, 1914년 4월 23일 참고.

94) *L'Islam*, 1914년 1월 6일.

95) *L'Islam*, 1914년 3월 5일.

인들의 토지는 모든 세금을 면제"받지만 알제리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선주민들은 예산 분배에서 거의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원주민법, 특별재판소(tribunaux d'exception), 행정적 구금과 같은 예외적인 사법 체제에 종속되어 항의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칼레드는 청년 알제리인 운동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조세 평등과 사법상의 평등, 예산의 균등한 분배, 그리고 알제리 선주민의 대표권 부여를 촉구했다.[96]

프랑스 시민들과의 동등한 권리 보장을 역설한 칼레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알제리 선주민들이 아랍-무슬림 정체성을 온전히 간직한 채 프랑스와 대등하게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가 "아랍" 혹은 "무슬림"이라고 통칭한 선주민들은 결코 "열등한 인종"이 아니며 "그 자신의 과거와 위대함을 갖춘 인종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기를, 우리 선조들의 종교 의례를 준수하고 그들의 전통과 기억을 존중하기"를 포기한 적 없었던 이들이었다. 칼레드는 알제리 선주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 이슬람 가족법 역시 거론했는데, 그에 따르면 "우리의 가족법"은 충분히 올바르고 고결한 "우리의 풍습과 신앙의 결과"이기에 강제로 "수정"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에게 이슬람은 결코 "광신"이 아니었으며, 프랑스가 내세우는 정의와 진보의 이념과 모순되지 않았다.[97] 따라서 칼레드는 이슬람 가족법과 원주민법을 사실상 연동시키는 식민 체제를 규탄하면서 알제리 무슬림들이 스스로 무슬림임을 포기할 필요 없이 프랑스의 일반법(droit commun) 하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1913년 소책자에서 칼레드는 프랑스 시민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이슬람 가족법 보존을 옹호하고 알제리 무슬림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권리를 제시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프레데릭 쿠퍼의 제안처럼 '정치체와 관련된 일련의 권리 및 의무들의 묶음'[98]을 '시민권'이라 볼 수

96) Emir Khaled, *Réflexions sur le rapprochement franco-arabe en Algérie / par l'émir Khaled petit-fils d'Abdelkader* (Alger: Imprimerie Gojosso, 1913), pp. 3-7, 10-11.
97) Khaled, *Réflexions sur le rapprochement*, pp. 5, 16-17.
98) Cooper, *Citizenship, Inequality, and Difference*, p. 4.

있다면 『화해』에서 칼레드가 요구한 선주민 권리들 역시 새로운 형태의 제국적 시민권을 요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대안적인 시민권은 기존의 프랑스 시민권에서 무슬림을 배제하는 원리가 된 사법상의 라이시테를 상대화하고자 했다. 오직 이슬람 가족법을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유와 권리를 부정당하는 알제리 무슬림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에게 종교적 가족법을 보전한 채로 프랑스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안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었으며 청년 알제리인 운동에도 잘 알려져 있었다.[99] 가령 1909년 벤 알리 파카르는 프랑스령 인도와 세네갈의 선주민들이 종교적 가족법을 유지한 채로 프랑스 의회에 대표권을 가지고 있음을 지목하며 알제리 무슬림 신민들에게도 참정권을 확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100] 아울러 1912년 신문 『이슬람』은 프랑스 법조계에서 무슬림 가족법을 보유한 알제리 선주민에게 일정한 정치적 권리를 허용할 것을 제안한 '불완전귀화(demi-naturalisation)' 방안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101] 같은 해 7월 프랑스 하원의원 메시미(Adolphe Messimy)가 징병제에 대한 보상으로 알제리 선주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 의회 보고서를 전재하여 소개하기도 했다.[102] 이처럼 법적 라이시테를 완화해 알제리 무슬림들이 고유한 가족법을 지키면서도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던 가운데 1914년 8월 알제리는 본국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

99) 알제리 무슬림들에게 기존의 가족법 포기 없이 완전한 프랑스 시민권을 일괄 부여하자는 법안은 두 좌파 하원의원 미슐랭(Henri Michelin)과 골리에(Alfred Gaulier)에 의해서 1887년에 최초로 발의되었다. 미슐랭은 이 법의 입법 이유로 알제리 무슬림들과 다른 시민들과의 평등, 특히 1870년 크레미외 법령을 통해 프랑스 시민으로 집단 귀화한 알제리 유대인들과의 평등을 들었다. 알제리 무슬림 지식인들 역시 1890년대부터 이슬람 가족법의 포기 없는 프랑스 시민권 취득을 요청했다. Renucci, "Le statut personnel des indigènes," pp. 177-178; Mcdougall, *A History of Algeria*, pp. 151-152.

100) Fekar, "La répresentation des musulmans Algériens," p. 22.

101) *L'Islam*, 1912년 6월 9일. '불완전귀화' 방안은 1911년 『원주민 평론(Revue Indigène)』에서 프랑스 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알제리 무슬림 선주민의 귀화 방안을 조사하였을 때 툴루즈 법대 교수 루아르 드 카르(Rouard de Card)가 제시한 것이었다. Renucci, "Le statut personnel des indigènes," pp. 181-183.

102) *L'Islam*, 1912년 7월 10일.

제1차 세계대전은 참전 열강들의 광범위한 식민지 동원을 낳았다. 1914~1918년 동안 프랑스는 제국 전역에서 대략 50만 명의 식민지 신민들을 전장에 투입하였고,[103] 그중 알제리 선주민은 17만 3천 명이 군인으로 동원되어 프랑스를 위해 싸우다 2만 6천 명이 사망했다.[104] 이들이 흘린 피는 식민 체제의 개혁을 가속화했다. 프랑스 의회는 '모국'을 위해 참전한 알제리 선주민들에게 정치적 보상으로 그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1919년 2월 4일 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알제리 선주민들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일부 확대하여 시의회 선주민 의석을 1,390석에서 1,540석으로, 도의원 선주민 의석을 18석에서 29석으로 늘렸으며, 재정대표단의 선주민 의석 중 식민 정부 임명직을 선출직으로 전환하였고, 이들 선주민 대표를 뽑는 선주민 선거인단을 시의회의 경우 5만 7천 명에서 9만 명으로, 도의회와 재정대표단의 경우 5천 명에서 10만 3천 명으로, 새롭게 창설된 제마아(jama'a: 천막촌의 선주민 자치 의회) 선거인단의 경우 당시 25세 이상 알제리 선주민 남성 인구의 43%에 해당하는 42만 5천 명으로 확대하였다.[105] 이와 함께 선주민 선거인들에게는 프랑스 시민과 동일한 형사 절차를 적용해 원주민법과 특별 형사재판소의 관할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했다.[106] 이상의 참정권 확대는 선주민 언론으로부터 "한 걸음 진전"[107]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실제 청년 알제리인 운동의 기대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1919년 2월 4일 법은 여전히 이슬람 가족법과 프랑스 시민권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하였으며, 귀화하지 않은 선주민 신민에게는 프랑스 본국 의회에서 어떠한 대표권도 인정하지 않았고 이 신민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억압적 사법 체제 역시 대부분 존속시켰기 때문이다.[108] 따라서 청년 알제리인 지식인들에

---

103) Richard S. Fogarty, *Race and War in France: Colonial subjects in the French Army, 1914-1918*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8), p. 2.

104) Hassett, *Mobilizing Memory*, pp. 26-27.

105) Ageron, *Histoire de l'Algérie contemporaine*, p. 279; Koulakssis and Meynier, *L'Emir Khaled*, p. 114; Zack, "Early origins of Islamic activism," p. 210.

106) Renucci, "Le statut personnel des indigènes," p. 199.

107) *L'Ikdam,* 1919년 3월 7일.

게 1919년 2월 4일 법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에 불과했다.

108) Renucci, “Le statut personnel des indigènes,” pp. 185-199.

Ⅳ. 에미르 칼레드의 정치활동
: 무슬림의 시민권과 라이시테의 재전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약소민족의 자결권을 옹호한 미국 윌슨 대통령의 14개조 선언은 전세계 식민 지역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윌슨주의적 순간"[109]을 맞아 칼레드는 1919년 5월 23일 익명의 동료 4명과 함께 "알제리 아랍인 대표단"의 수장으로서 윌슨 대통령에게 비밀리에 청원서를 보냈다.[110] 그동안 공개된 지면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강경한 어조로 청원서는 프랑스의 식민 통치가 알제리에 빈곤과 압제, 자유의 퇴보만을 가져왔다고 규탄했다. 청년 알제리인 운동이 대외적으로 환영한 프랑스의 징병과 전시 동원 역시 실제로는 선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임도 분명히 하였다. 그에 따라 청원서는 "어떠한 인민도 그들이 거부하는 주권 하에 살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는 윌슨 대통령의 선언을 환영하면서 피식민 알제리인들이 민족자결권의 원칙에 따라 "국제연맹의 보호 하에 우리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도록 우리가 자유롭게 선출한 대표들"을 파견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111]

칼레드를 알제리 민족주의의 선구자로 일컫게 만든 이 청원서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프랑스의 정교분리법을 정확히 언급하며 식민 지배를 규탄한 부분이다.

> "수억 프랑으로 산정되며 종교 기념물 유지와 빈자 구호에 사용되는 종교기부금(habous) 재산은 몰수되었고 유럽인들에

109) Erez Manela, *The Wilsonian Moment: Self Determination and the International Origins of Anticolonial Na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10) Koulakssis and Meynier, *L'Emir Khaled*, p. 126; Gheziel, "L'éveil politique de la société algérienne," p. 390.

111) Emir Khaled, "Pétition de L'Emir Khaled adressée au Président des Etats-Unis Wilson (1919)," Kaddache, *L'Emir Khaled: Documents et témoignages*, pp. 123-124.

> 게 분배되었습니다. 기부자들이 그 재산에 지정한 명확하고 종교적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지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종교기부금 재산마저 프랑스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선정한 굴종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종교 결사(cultuelle)의 외피를 쓰고서 말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아무런 권한도 갖지 않는다는 점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밑줄은 인용자의 강조)"[112]

1913년 소책자 『화해』에서만 해도 정교분리 의제를 언급하지 않았던 칼레드는 위 청원서에서 프랑스 공화국이 자신의 라이시테 기조와 모순되게 알제리 무슬림들에게서 신앙의 자유를 박탈했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프랑스는 후부스를 몰수해 무슬림들이 자율적으로 종교활동을 수행할 기반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정교분리법 통과 이후에도 여전히 식민 당국에 종속적인 종교 인사들을 거느리면서 무슬림 주민들의 신앙활동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통제권을 이용하여 알제리 식민정부가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모스크와 이슬람 성지에서 군악대를 동원한 정치 행사를 조직해 "무슬림의 종교적 기풍을 모욕"하기까지 했음을 칼레드는 강하게 지탄하였다.[113] 이러한 비판은 오마르 부데르바의 '무슬림 교권주의' 규탄을 지지했던 그의 과거 행보와 궤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이슬람 가족법의 보존을 주장하며 무슬림 정체성을 중시한 칼레드 역시 프랑스의 일관성 없는 정교분리 정책에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칼레드의 청원서는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 알제리의 '윌슨주의적 순간'이 단명한 이후 무슬림 지식인들은 민족자결권에 기대를 걸기보다 본국을 위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무슬림들의 희생을 강조하면서 그 보상으로 새로운 제국적 시민권을 요구하는 데 집중했다.[114] 특히 1919년 2월 4일 법 통과 이후 무슬림의 시민권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112) Khaled, "Pétition de L'Emir Khaled," pp. 121-122.
113) Khaled, "Pétition de L'Emir Khaled," p. 122.
114) Hassett, "Reinventing Empire in the Wake of the Great War," p. 38.

활발해졌는데,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19년 5~6월 동안 선주민 언론 『이크담(L'Ikdam)』[115]에서 벌어진 일련의 논쟁이었다. 알제리 무슬림들의 귀화 방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공방은 칼레드 역시 참여한 쟁론으로서 프랑스 공화국의 라이시테와 뒤얽힌 시민적 자격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자세히 살펴볼 만하다.

먼저 1919년 5월 24일 기고자 가브리엘 세아이으(Gabriel Séailles)는 알제리 무슬림의 집단 귀화 정책을 제안한 장 멜리야(Jean Mélia)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논전의 불을 지폈다. 멜리야는 알제리 총독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언론인으로 에미르 칼레드의 벗이자 선주민을 위한 개혁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그는 당시 자신의 책 『프랑스와 알제리(La France et l'Algérie)』에서 알제리의 진정한 프랑스화를 위해 모든 선주민들에게 예외 없이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1870년 크레미외 법령과 1889년 국적법이 각각 유대인 선주민과 유럽인 정착민 자손들을 일괄 프랑스 시민으로 귀화시킨 것처럼 무슬림 선주민들에게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세아이으는 선주민을 집단 귀화시키는 "혁명적 방법론"이 이슬람 가족법의 폐지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무슬림 대중의 저항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쿠란은 "교회와 국가 간의 분리를 허용치 않는", 즉 "시민법과 종교법 간의 분리"를 허용치 않는 "민법전이자 종교법전"이므로 "쿠란법의 포기"는 무슬림들에게 배교로 간주될 것이었다. 따라서 '법과 종교의 분리'를 전제로 한 프랑스 시민의 자격은 무슬림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 터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법적 라이시테의 원칙을 완화해 이슬람 가족법을 따르는 무슬림에게도 시민권을 허용하는 것은 곧 한 나라 안에 "두 가지 범주의 프랑스인, 즉 한 집단은 민법에 복종하고, 다른 한

115) 알제리 선주민 신문 『이크담(L'Ikdam)』은 기존 선주민 신문 『이슬람(L'Islam)』과 『라시디(Le Rachidi)』의 합병으로 1919년에 창간되었다. 이 신문은 알제리 선주민 엘리트의 통합을 상징했으며, 1921년 9월 2일부터 에미르 칼레드가 편집장을 맡았다. 1919년 3월 22일 알제 도 경찰청 보고서에 따르면 신문 『이크담』의 발행부수는 3,000부에 달했는데, 이는 몇몇 유럽인 정착민 측 신문 부수에 필적하는 양이었고 다른 선주민 신문들의 발행부수가 1,500~2,500부였음을 감안할 때 상당한 수치를 보인 것이었다. Zahir, *Histoire de la presse indigène*, pp. 256, 282, 287.

집단은 그에 복종하지 않는 두 집단"을 만드는 것이기에 결코 "용납될 수 없"었다. 따라서 세아이으는 단기간에 선주민들을 집단 귀화시키기보다 이들이 프랑스에 점진적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6]

이에 장 멜리야는 1919년 6월 7일 기사를 통해 세아이으에게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말한 '알제리의 프랑스화'란 점진적 과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해명하였으며, 그와 별개로 알제리 무슬림들은 인류의 근대적 발전과 세속화의 흐름에 따라 정교분리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가 보기에 종교는 세상의 규칙과 함께 변화하며, 종교법과 시민법 간의 단절을 받아들이는 알제리 무슬림들의 숫자는 교육의 확대와 학문의 보급 덕분에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었다. 그 예로 멜리야는 청년 알제리인 운동과 같이 개명된 무슬림 선주민 지식인 집단의 등장을 내세웠다.[117]

하지만 바로 그 지식인의 일원인 에미르 칼레드는 1919년 6월 21일 기사를 통해 멜리야의 낙관에 제동을 걸었다. 그에 따르면 이슬람 가족법에 대한 알제리 무슬림들의 입장은 세아이으의 관찰이 옳았다. 쿠란이 무슬림들의 "민법과 종교법의 기초"를 이루는 "고정불변"의 법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고, "몇몇 희귀한" 소수 지식인들과 달리 무슬림 대중은 "시민법과 종교법 간의 단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프랑스 역시 이들의 집단 귀화를 바라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알제리에서 5백만 무슬림이 모두 프랑스 시민이 된다면 수적으로 열세인 유럽인 정착민들이 그에 "잠겨버리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었다.[118] 칼레드는 장 멜리야가 선례로 제시한 크레미외 법령의 경우 그것이 유대인들의 사전 의사 수렴 없이 갑작스럽게 공포되었고 애초에 알제리 유대인 선주민 인구가 7만여 명[119]에 불과했기 때문에 집단적인 귀화 부담이 크지 않아

116) *L'Ikdam,* 1919년 5월 24일.
117) *L'Ikdam,* 1919년 6월 7일.
118) 1921년 알제리 인구조사에 따르면 알제리 내 유럽인 정착민은 대략 52만 명, 프랑스 시민으로 귀화한 알제리 유대인은 7만 명, 귀화하지 않은 알제리 선주민은 489만 명이었다. Kaddache, *Histoire du nationalisme algérien*, p. 34.
119) 실제로 크레미외 법령 공포 당시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받은 유대인은 총

실현 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알제리 무슬림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장 멜리야가 내세운 동화(assimilation)가 아닌 연합(association)이었다. 그에 따라 칼레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 1) 모든 예외적 조치들을 폐지하고 일반법으로 돌아갈 것
> 2) 양원(상원과 하원)에 선주민 대표단을 마련할 것
> 3) 프랑스어와 아랍어로 된 의무 교육
> 4) 아랍 대학의 창설
> 5) 군정(軍政) 지역과 혼합 코뮌(commune mixte)의 폐지
> 6) 본국에 대한 알제리 세 개 도(道)의 전면적인 병합(rattachement)
> 7) *결정되어야 할 하나의 범주로서*(pour une catégorie à déterminer) "이슬람 가족법의 적용을 받는 프랑스 시민의 자격"을 선주민들이 취득할 것. (기울임은 원저자의 강조, 밑줄과 따옴표는 인용자의 강조)[120]

위 요구안은 전반적으로 알제리 무슬림들이 예외적 체제에서 벗어나 프랑스 시민들과 평등한 권리를 누리면서도 자신들의 무슬림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중 마지막 요구안은 바로 가브리엘 세아이으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던 "이슬람 가족법을 유지"하는 새로운 형태의 프랑스 시민권이었다. 사법상의 라이시테와 프랑스 시민의 자격을 긴밀히 연동시키는 논리 회로를 돌파하기 위해 칼레드는 알제리 선주민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용감하고 충성스럽게 싸웠"으며, "프랑스를 위해 피를 흘림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권리를 얻었"음을 강조했다. 기존의 시민권에서 무슬림을 배제한 논리 근저에는 궁극적으로 무슬림이 '위험'하다는 안보적 시각이 깔려 있었던 만큼, 칼

34,574명이었다. Joëlle Allouche-Benayoun, "Les enjeux de la naturalisation des Juifs d'Algérie: du dhimmi au citoyen," Luizard, ed., *Le choc colonial et l'islam*, p. 190.

120) *L'Ikdam,* 1919년 6월 21일.

레드는 이에 반박하기 위해 알제리 무슬림들이 제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입증한 '충성'을 내세웠던 것이다. 아울러 그는 세네갈의 4개 코뮌과 같이 이미 종교적 가족법을 인정한 채로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한 선례가 제국 내에 존재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게 지적했다.[121] 즉 세속공화국의 법적 전통을 우회하기 위해 칼레드는 무슬림이 프랑스에 '위험'하지 않은 '충성'스러운 신민임을 역설하면서 복잡한 제국 현실을 감당할 실용적 해법으로 법적 라이시테가 완화된 대안적 시민권을 정당화하였다.

1919년 6월 칼레드가 제시한 무슬림 시민권을 같은 해 5월 윌슨 대통령에게 보냈던 청원서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그가 프랑스 식 라이시테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이슬람 역시 정교분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장 멜리야의 낙관과 달리 무슬림들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정교일치적임을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알제리 무슬림들이 프랑스가 요구하는 사법상의 라이시테를 수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시민적 권리를 요구하는 입장을 채택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레드가 정교분리법을 위반하는 식민 당국을 비판한 것은 그가 이론적·철학적 원칙으로서 라이시테를 전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권리 측면의 라이시테, 즉 예배의 자유를 무슬림이 보장받아야 할 시민적 자유 중 하나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정교분리법은 프랑스의 라이시테 그 자체가 아니라 피식민 무슬림들이 식민 당국으로부터 자율적인 종교 활동을 쟁취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었다. 기실 1905년 정교분리법은 종교와 공적 영역 간의 엄격한 분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신앙 활동 및 종교 재산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이 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라이시테 이념 전체를 수용할 필요는 없었다. 게다가 라이시테 개념 자체가 복합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던 만큼, 무슬림 지식인들은 프랑스 당국의 비일관적인 정책만큼이나 선별적으로 라이시테를 수용하고 재전유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시민권을 주조할 수 있었다.

1919년 2월 4일 법에 따라 알제리 무슬림들에게 확대된 참정권은 그해 11월 30일에 열린 알제리 시의회 선거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청년 알

121) *L'Ikdam,* 1919년 6월 21일.

제리인 운동 인사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의 모든 인민들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고 더 많은 정의와 권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무슬림 선주민들의 부흥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하면서 적극 선거전에 뛰어들었다.[122] 만약 이들이 식민지 의회에 진출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구상해 온 ‘제국적 시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터였다. 하지만 이 지식인들은 곧 무슬림의 ‘귀화’ 문제를 둘러싸고 복수의 후보단으로 분열하였다.[123] 칼레드와 함께 청년 알제리인 운동을 이끌었던 오마르 부데르바와 의사 벤타미는 1919년 2월 4일 법이 요구한 대로 이슬람 가족법을 포기한 ‘귀화’ 무슬림의 숫자를 늘려 프랑스 의회를 장악하자는 전략을 선택했다.[124] 반면 칼레드는 이슬람 가족법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서서 귀화를 거부하고 무슬림 정체성에 호소해 선주민 대중의 지지를 규합하고자 했다.[125] 그리하여 칼레드가 포함된 핫즈 무사(Hajj Moussa) 후보단과 벤타미 후보단이 알제에서 격돌하였다. 그러나 양측의 치열한 대립과는 대조적으로 두 후보단의 선거 공약은 무슬림 주민의 권익 보장 측면에서 대동소이했다. 특히 반교권주의를 강하게 주장했던 벤타미-부데르바 측도 무슬림 공동묘지 엘-케타르(El-Kettar) 개선이나 모스크의 유지 보존을 기존 알제리 선주민 시의원들의 성과이자 자신들의 추후 공약으로 내건 점은 주목할 만하다.[126] 이는 라이시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청년 알제리인 분파도 현실적으로는 엄격한 정교분리보다 무슬림들의 신앙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했음을 알려준다.

1919년 11월 선거 결과는 핫즈 무사-칼레드 후보단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알제 시 무슬림 투표자 총 1,053명 중 벤타미와 부데르바는 각각

---

122) *L'Ikdam*, 1919년 11월 13일.

123) 기존 연구들은 당시 알제 도지사 알베르 르페뷔르(Albert Lefébure)가 청년 알제리인 운동에 무슬림 귀화 문제를 제기해 분열을 촉발했다고 지적한다. Ageron, “Enquête sur les origines,” p. 20; Koulakssis and Meynier, *L'Emir Khaled*, p. 114; Aissaoui, “‘Between Two Worlds’,” p. 66.

124) *L'Ikdam*, 1920년 6월 4일.

125) Mahfoud Kaddache, *La vie politique à Alger de 1919 à 1939* (Alger: SNED, 1970), p. 41.

126) *L'Ikdam*, 1919년 11월 20일.

332표와 128표 득표에 그친 반면, 핫즈 무사와 칼레드는 각각 940표와 925표의 지지를 얻었다.[127] 이는 알제리 선주민 선거인단이 벤타미 측의 동화주의 노선보다 이슬람 가족법의 보존을 강조한 칼레드 측 후보단의 손을 들어준 결과였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선거에서 패배한 벤타미 측은 칼레드가 선거운동에서 "무슬림 광신주의"를 동원했다고 규탄하였고, 이들의 고발을 받아들인 알제 도 법원은 1919년 11월 시의회 선거 결과를 무효화했다.[128] 이에 반발해 칼레드 측은 즉시 국사원에 항소했다. 세속공화국의 선거에 무슬림 광신을 개입시켰다는 혐의를 물리치고자 칼레드 측은 선거운동에서 사용된 종교적 표현이 의례적 표현일 뿐이라 반박했고 자신들이 그저 "우리의 종교에 충실한 채로, 우리의 가족법을 보존하기를 원했"을 뿐인 충성스러운 "프랑스인"이라고 항변했다.[129] 그러나 칼레드를 "반(反)프랑스적"인 "무슬림 민족주의" 선동가라고 공격하는 유럽인 정착민 언론과 식민 당국의 공세는 계속되었다.[130] 이에 맞서 칼레드를 중심으로 결집한 청년 알제리인 지식인들은 무슬림 대중의 지지를 웅변하듯 1920년 도의회 선거와 재정대표단 선거에서도 파죽지세의 승리를 이어나갔다.[131]

치열한 선거전 끝에 알제리 지방의회에 진출한 청년 알제리인 지식인들은 곧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일련의 발의안을 제출했다. 알제 도의회와 재정대표단에서 칼레드 측 의원들은 1919년 7월 15일 자로 만료된 원주민법 징계권의 부활 반대,[132] 예외적 사법 체제의 폐지, 모든 알

127) 칼레드-핫즈 무사 측 후보들은 653~940표, 벤타미 측 후보들은 120~392표를 얻었다. *L'Ikdam*, 1919년 12월 4일; Kaddache, *La vie politique à Alger*, p. 42.

128) Bouveresse, *Un parlement colonial?*, p. 849. 알제 도 법원의 상세한 판결 이유에 관해서는 Kaddache, *Histoire du nationalisme algérien*, p. 110 참고.

129) *L'Ikdam*, 1920년 3월 12일; Koulakssis and Meynier, *L'Emir Khaled*, p. 186.

130) Kaddache, *La vie politique à Alger*, p. 42; Aissaoui, "'Between Two Worlds'," pp. 68-69.

131) 1920년 2월 1일 도의회 선거에서 칼레드는 2,295표를 얻어 245표를 얻은 경쟁자 탐잘리(Tamzali)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아울러 1920년 4월 18일 재정대표단 선거에서는 칼레드가 7,000표를 얻어 2,500표를 득표한 제룩 마히에딘(Zerrouk Mahieddine)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L'Ikdam*, 1920년 3월 12일; idem, 1920년 4월 23일; Kaddache, *La vie politique à Alger*, p. 43.

132) 1881년 원주민법이 명문화한 행정관의 징계권은 1914년 7월 15일 법률에 따라 1919년 7월 15일 자로 소멸되었다. *L'Ikdam*, 1920년 9월 24일; Zahir, *Histoire*

제리인에게 일반법 적용, 귀화하지 않은 무슬림 선주민들에게 프랑스 의회 대표권 부여, 기타 선주민과 프랑스 시민 간의 평등한 대우를 요구했다.[133] 이러한 요구안들은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슬람 가족법을 포기하지 않은 무슬림 신민들에게 구체적인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법적 라이시테를 완화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권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었다.

한편 정교분리 의제는 여기서 명시적으로 제기되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된 활동은 칼레드가 입성한 재정대표단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과거 정교분리법을 지키지 않는 식민당국을 비판한 바 있었던 칼레드는 재정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예배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를 비롯한 무슬림 재정대표들은 후부스의 반환이 당장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정교분리법의 전면적인 적용을 즉각 주장하기보다, 무슬림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예산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실 정교분리법은 재정대표단에서 알제리 유럽인 대표들이 무슬림 예배 예산을 공격하는 주요한 명분으로 동원되기 일쑤였고, 1908년부터 정교분리법이 알제리에 불완전한 형태로나마 시행된 결과 무슬림 공식 성직자들의 보수는 대폭 삭감되었으며 향후 종교시설의 신설과 확장은 예산 지원이 불가능해졌다.[134] 이러한 상황에서 후부스의 반환 없이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예배 관련 예산을 폐지한다면 이는 무슬림들의 신앙활동을 오히려 저해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었다. 그에 따라 칼레드를 비롯한 청년 알제리인 재정대표들은 정교분리 원칙과는 상반되게, 무슬림 신앙 활동의 현실적 보존에 초점을 맞추어 열악한 성직자 처우를 개선하고 황폐화된 모스크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 편성

---

de la presse indigène, pp. 236-237.

133) *L'Ikdam*, 1920년 5월 7일; idem, 1920년 6월 4일.

134) 알제리에 정교분리법이 적용됨에 따라 무슬림 예배 인사 예산은 1908년 216,027 프랑에서 1909년 172,287 프랑으로 감소했으며 이 액수는 1920년까지 동결되었다. 아울러 1908년까지 무슬림 예배 예산은 성직자 급여, 예배 관련 기자재 비용, 종교시설 건립 및 유지비 예산으로 나뉘어 편성되었으나, 정교분리법 발효 이후인 1909년 예산안부터는 직무수당을 포함한 성직자 보수 비용만 편성되었다. *Délégations financières algériennes* (이하 *DF*), 1907년 4월 6일, pp. 186-187; idem, 1908년 4월 1일, pp. 51-55; idem, 1908년 4월 15일, pp. 173, 274.

에 힘썼다.[135] 그러면서도 식민 당국의 개입으로부터 종교 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한 칼레드는 알제리 행정부에 굴종적인 종교 결사 인사들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으며,[136] 메카 성지 순례를 통제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조치에 반대해 알제리 무슬림들에게 성지 순례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137] 이상의 활동은 칼레드가 현실정치를 고려해 정교분리법의 완전한 적용을 요구하지는 않았더라도 알제리 무슬림들을 위해 '권리'로서의 라이시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1919년 11월 말 알제리 지방 의회에 진출한 이래로 칼레드를 필두로 한 청년 알제리인 정치인들은 프랑스 시민들과의 '평등' 속에서 무슬림 정체성이라는 '차이'를 보존하는 '연합'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는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과 충돌을 일으킨 프랑스의 라이시테를 재전유하여 무슬림들에게 '의무'로서 부과된 사법상의 라이시테를 상대화하고 그들에게 부정되었던 '권리'로서의 라이시테를 보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적 시민권'을 추구하는 기획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꿈은 식민 당국과 유럽인 정착민들의 반대라는 공고한 벽에 부딪혔다. 1920년 재정대표단에서 칼레드와 그의 동료들이 발의한 징계권 폐지 및 선주민 의회 대표권 요구안은 부결되었고, 특히 귀화하지 않은 무슬림들의 의회 대표권 부여 방안은 프랑스 본국 의회만이 공화국의 정체(政體)에 변경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138] 아울러 알제리 유럽인 정치인들은 1920년 5월 말 알제리 시장 대회를 열어 1919년 2월 4일 법의 폐지와 원주민법 징계권의 부활을 촉구하면서 무슬림 지식인들이 요구한 식민 체제의 개혁을 단호하게 거부했다.[139] 이에 칼레드를 비롯한 무슬림 재정대표들은 알제

135) *DF*, 1920년 5월 27일, pp. 68-83; idem, 1920년 6월 15일, pp. 310-311; idem, 1920년 11월 16일, pp. 61-63; idem, 1922년 6월 2일, pp. 55-61. 칼레드가 참여한 예배 예산 심의는 1920년 5월 27일과 1922년 6월 2일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136) *DF*, 1920년 5월 19일, p. 10; idem, 1920년 5월 27일, pp. 69-70. 알제 도에서는 1908년에 결성된 2개의 종교 결사 중 식민 당국에 친화적인 종교 결사만 창설 허가를 받았다. 칼레드가 재정대표로 활동한 기간 동안 무슬림 재정대표단 의장을 맡은 벤 시암(Ben Siam)은 대표적인 친(親)식민 인사로서 알제 도 종교 결사의 회장이기도 했다. *DF*, 1920년 5월 27일, p. 70.

137) *DF*, 1920년 5월 27일, pp. 82-83; idem, 1922년 6월 2일, pp. 57-60.

138) Bouveresse, *Un parlement colonial?*, p. 862.

리 시장 대회의 “반(反)민주적”인 요구안을 규탄하는 발의안을 가결했으나, 오히려 이 발의안에서 알제리 시장 대회 측이 모욕적으로 느낀 구절을 수정하는 것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깊은 좌절과 환멸을 느꼈다.[140] 뿐만 아니라 그 해 7월 말 프랑스 의회에서는 1919년 7월 15일에 소멸되었던 원주민법상 징계권과 감시 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었다.[141] 이에 위기감을 느낀 청년 알제리인 운동 인사들은 그동안의 분열을 수습하고 화해를 도모함으로써 “무슬림 공동의 대의”를 위한 단결된 대응을 모색했다.[142]

1920년 10월 칼레드 측 의원들의 총사퇴 이후 통합후보단을 출범시킨 청년 알제리인 운동은 1921년 선거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두며 무슬림 의회 대표권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박차를 가했다.[143] 1921년 5월 칼레드는 알제리를 방문한 프랑스 의원들에게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무슬림들이 입증한 ‘충성’에 호소하면서 이들에게 프랑스 의회 내 대표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144] 아울러 같은 해 5월 31일 무슬림 재정대표단은 알제리 유럽인들의 우위를 강화할 식민지 자치권 증대 방안에 반대하여 선주민들에게 프랑스 의회 대표권을 부여하고 알제리 지방 의회에서 선주민 의석을 5분의 2로 늘릴 것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145] 이 보고서는

---

139) *L'Ikdam*, 1920년 6월 4일; Ageron, “Enquête sur les origines,” p. 22; Bouveresse, *Un parlement colonial?*, p. 863.

140) *DF*, 1920년 5월 31일, pp. 414-415, 511; Bouveresse, *Un parlement colonial?*, pp. 864-865.

141) 원주민법이 규정한 행정관 징계권과 감시 조치를 부활시킨 1920년 8월 4일 법은 그 해 7월 29일에 프랑스 하원에서 아무런 논의 없이 기습적으로 통과되었다. *L'Ikdam*, 1920년 9월 10일.

142) Béchir Tlili, “L'Algérie au lendemain de la grande guerre: revendications et reformisme: un document inedit sur la situation politique et administrative des indigènes de l'Algérie (1920-1921),” *Les cahiers de Tunisie: revue de sciences humaines*, vol. 22, no. 87-88 (1974), pp. 117-118.

143) 칼레드를 중심으로 한 통합후보단은 1921년 1월 알제 시의회 보궐 선거, 1921년 7월 재정대표단 보궐선거, 1921년 10월 도의회 보궐선거에서 모두 승리하였다. 이상의 승리로 청년 알제리인 운동은 낙관적인 분위기를 회복하였다. Ageron, “Enquête sur les origines,” pp. 28-32; Tlili, “L'Algérie au lendemain de la grande guerre,” pp. 116-121.

144) *L'Ikdam*, 1921년 5월 6일.

145) *DF*, 1922년 6월 20일, p. 271; Bouveresse, *Un parlement colonial?*, p. 869.

그 해 말 칼레드의 동료 아흐메드 발룰(Ahmed Balloul)에 의해 알제리 개혁을 검토하는 프랑스 상원위원회에 제출되었다.[146] 이 무슬림 지식인들의 요구에 호의적인 프랑스 본국 의원들은 에두아르 에리오(Édouard Herriot)를 회장으로 하여 '알제리 선주민의 의회 대표권을 위한 프랑스 동맹(Ligue française pour la représentation des indigènes algériens au Parlement)'을 결성하기도 하였다.[147] 그 결과 알제리 식민 정치에서 선주민들의 의회 대표권 요구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알제리 행정부와 식민정착민 정치인들은 프랑스 민법을 따르지 않는 선주민들에게 프랑스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 안의 국가를, 프랑스에 적대적인 국가를, 공화주의 이념에 적대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148] 그 가운데 1922년 4월 20일 칼레드가 알제리를 방문한 밀랑(Alexandre Millerand) 대통령에게 무슬림의 의회 대표권을 호소한 연설은 식민정착민과 본국 프랑스 언론의 대대적인 분노를 샀다.[149] 이 연설은 "소동(incident)", "쿠데타", "선주민 민족주의의 표현", 심지어 모스크바 소비에트의 지령을 받은 행위로 맹공을 당했다.[150]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22년 5월 20일 무슬림 재정대표단은 선주민들의 의회 대표권 부여를 촉구하는 발의안을 다시금 가결했으나, 한 달 후 총회에서 이 발의안 심의를 유럽인 정착민 의장이 거부함에 따라 식민 체제의 개혁 가능성에 완전한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151]

이 시기 칼레드의 정치 활동은 당시 첨예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알제리 무슬림의 의회 대표권에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

146) Emir Khaled, "La Situation des Musulmans d'Algérie," *Lettre au Président Wilson et autres textes* (Alger: ANEP, 2005), p. 73; Bouveresse, *Un parlement colonial?*, p. 870.

147) Ageron, "Enquête sur les origines," p. 33. 하지만 이 동맹은 거의 활동하지 않았다.

148) 이 논리는 다음의 기사에서 명확하게 표현되었다. *L'Echo d'Alger*, 1920년 7월 23일.

149) *L'Ikdam*, 1922년 6월 2일; Ageron, "Enquête sur les origines," pp. 33-34. 칼레드가 밀랑 대통령 앞에서 한 연설 전문은 *L'Ikdam*, 1922년 4월 28일 참고.

150) *L'Ikdam*, 1923년 3월 30일; Ageron, "Enquête sur les origines," p. 34.

151) *DF*, 1922년 6월 20일, pp. 271-292; Bouveresse, *Un parlement colonial?*, p. 871.

와중에도 1922년 재정대표단 활동을 통해 칼레드는 무슬림들의 실질적인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노력함으로써 '권리로서의 라이시테' 역시 꾸준히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152] 아울러 프랑스의 정교분리에 대한 칼레드의 시각은 1922년 8월 4일 신문『이크담』에 그가 아랍어로 쓴 기사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정치는 분리되지 않는다(Din-na wa Siyasatu-na la yaftariqan)"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여기서 칼레드는 이슬람 세계에 대한 유럽의 정책이 무슬림을 기독교도들의 지배에 복속시키기 위함이었을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슬람 신앙과 율법의 수호를 강조하였다. 그가 보기에 프랑스의 정교분리(Fasl baina al-Din wa al-Dawla)는 그 국가의 이해관계, 특히 무슬림에 대한 기독교 유럽의 지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폐기될 수 있는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153] 따라서 칼레드는 "위대한 쿠란"이 가져다 준 "고결한 법"과 "옛 선조들의 신앙"으로 무슬림들이 돌아갈 때 비로소 "무지와 치욕과 실패의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러한 관점에서 칼레드는 당시 튀르키예 독립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케말 파샤의 앙카라 정부가 이슬람 신앙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상찬하였다.[154] 이상의 내용을 통해 칼레드는 독실한 무슬림으로서 법과 종교, 정치와 종교가 '근본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철학적 차원의 라이시테에 결코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는 이슬람의 정교일치적 성격을 분명하게 인정했고 오히려 프랑스의 정교분리 정책이 국가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성 없게 운용되는 노

152) *DF*, 1922년 6월 2일, pp. 55-61. 이 회의에서 칼레드는 무슬림 하급 성직자의 수당 인상, 모스크 수리 및 유지 비용 예산 편성, 알제리 행정부와 외부 단체의 개입 없는 메카 순례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였다.

153) "프랑스의 정교분리가 기독교 세계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슬람 세계에서도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 사는 기독교도 주민들 사이에서도 프랑스의 정책에 피해를 입혔음이 명백해 보였을 때, 프랑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과의 독실한 관계로 되돌아갔다." *L'Ikdam*, 1922년 8월 4일.

154) 무스타파 케말을 독실한 무슬림이라고 상찬한 칼레드의 평가는 실제 현실과는 괴리가 있었다. 튀르키예 독립 전쟁 승리 후 케말 파샤는 세속주의 공화국의 건설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알제리 무슬림들은 그를 서방에 맞서 승리한 이슬람의 영웅으로 추앙하였다. Koulakssis and Meynier, *L'Emir Khaled*, pp. 212-213; Nahas Mohamed Mahieddine, "La pensée politique de Mustafa Kemal Atatürk et le Mouvement national algérien," *Insaniyat*, no. 25-26 (2004), p. 136.

선에 불과하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따라서 피식민 무슬림들에게 부과되는 사법상의 라이시테는 그에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 이 라이시테를 해체·재구성함으로써 '예배의 자유'라는 또 다른 측면의 라이시테를 실현하려는 것이 그의 정치적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칼레드를 비롯한 청년 알제리인 운동의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22년 말 식민 언론의 공세는 더욱 강력해졌고, 알제리 식민 정부의 선거구 조작 하에 진행된 10월 선거는 청년 알제리인 운동의 패배로 돌아갔다.[155] 식민 정부와 유럽인 정착민 언론이 칼레드에 대한 공격을 한층 더 강화한 가운데, 사회주의자 하원의원 마리우스 무테(Marius Moutet)와 최초의 세네갈 흑인 하원의원 블레즈 디아뉴(Blaise Diagne)가 발의한 알제리 선주민의 의회 대표권 부여 법안은 식민 정부와 알제리 유럽인 의원들의 집단적인 항의를 받고 1922년 말 의회에서 보류당했다.[156] 게다가 같은 해 연말 알제리 식민정착민 하원의원들은 프랑스 외무부가 칼레드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박탈할 것을 요구하였다.[157]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알제리의 원주민법 체제를 5년 더 연장하는 법안까지 하원에서 통과되었다.[158] 그에 따라 청년 알제리인 운동 내부에서도 칼레드가 식민정착민 측 세력을 지나치게 자극했다며 탓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159] 이듬해 초부터 칼레드는 본국 프랑스와 알제리 유럽인 언론의 집요한 비방에 시달렸고, 식민정착민 하원의원 모리노(Émile Morinaud)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160] 이상

---

155) Ageron, "Enquête sur les origines," pp. 36-37; Koulakssis and Meynier, *L'Emir Khaled*, p. 119. 이 선거 패배 이후 칼레드와 동료 정치인들 간에 분열이 일어났고 식민 정착민 측 언론의 공격은 배가되었다.

156) Ageron, "Enquête sur les origines," pp. 35-36. 이 법안은 1923년 5월 30일 의회 내 무슬림 문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폐기되었다.

157) 1922년 12월 20일 콩스탕틴 지역구 하원의원 에밀 모리노(Émile Morinaud)는 프랑스 정부가 압델카데르의 후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서 칼레드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프랑스 외무부 예산이 압델카데르 후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총 60,875 프랑이었는데 칼레드는 1923년에 가장 큰 할당액인 7,500 프랑을 받았다. Ageron, "Enquête sur les origines," p. 37.

158) Koulakssis and Meynier, *L'Emir Khaled*, p. 189. 1922년 12월 20일 프랑스 하원은 원주민법상의 징계권을 5년 더 연장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칼레드의 기사는 *L'Ikdam*, 1922년 12월 29일 참고.

159) Koulakssis and Meynier, *L'Emir Khaled*, p. 119.

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시달린 칼레드는 1923년 4월 재정대표단 선거후보 사퇴를 알리면서 알제리 정계에서 은퇴하였다.[161] 이 4월 선거는 청년 알제리인 운동의 완패로 끝났다.[162] 그 해 8월 칼레드는 알제리를 떠나 알렉산드리아로 망명하였다. 식민지 정치 무대에서 칼레드가 퇴장함에 따라 알제리 선주민 정치는 깊은 좌절감 속에서 당분간 침체기를 겪어야 했다.[163]

망명 이후 칼레드는 프랑스 공산당과 교류하면서 정치적 재기의 기회를 탐색했다. 1924년 프랑스에서 좌파 카르텔(Cartel des gauches) 정부가 집권함에 따라 칼레드는 7월 3일 당시 수상 에두아르 에리오에게 취임을 환영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여기서 그는 알제리 선주민을 위한 정치적 요구사항으로 유럽인 정착민들과 동등한 의회 대표권 부여, 예외적 체제의 폐지와 프랑스의 일반법 적용, 프랑스인들과 평등한 군복무, 군과 민간 직책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의무교육의 전면적 적용과 교육의 자유 보장, 언론과 결사의 자유, 사회입법 및 노동입법 적용, 선주민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프랑스로 갈 권리, 전면적인 사면(赦免),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을 무슬림 예배(culte musulman)에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164] 알제리 역사가 마흐푸드 카다슈(Mahfoud Kaddache)는 이 편지의 내용이 청년 알제리인 운동 강령의 "가장 완전하고 명확한 정식화"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165] 그 중 칼레드가 제시한 '정교분리법의 완전한 적용'은 알제리 민족운동사상 처음으로 정교분리 의제가 명시적인 강령의 형태로 드러난 것이었다. 이러한 강령은 갑

160) 1923년 1월부터 알제리 식민정착민 언론은 칼레드에 반대하는 무슬림 인사들의 청원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며, 프랑스 극우 언론 『악시옹 프랑세즈(L'Action Française)』는 칼레드를 "공산주의의 앞잡이"라고 공격했다. 같은 해 3월 24일 칼레드는 알제리 유럽인 하원의원 모리노의 아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해 벌금 1천 프랑과 손해배상금 5천 프랑을 선고받았다. Ageron, "Enquête sur les origines," p. 38; Bouveresse, *Un parlement colonial?*, p. 873.

161) *L'Ikdam,* 1923년 4월 6일.

162) Koulakssis and Meynier, *L'Emir Khaled*, p. 120.

163) Aissaoui, "'Between Two Worlds'," p. 67; Bouveresse, *Un parlement colonial?*, p. 875.

164) *L'Humanité*, 1924년 7월 3일.

165) Kaddache, *Histoire du nationalisme algérien*, p. 93.

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20세기 초부터 청년 알제리인 운동이 라이시테 문제와 씨름하며 그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수립해 온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었다.

1924년 7월 파리에 도착한 칼레드는 프랑스 공산당의 후원 하에 같은 달 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알제리 무슬림의 상황(La Situation des Musulmans d'Algérie)'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열었다.[166] 북아프리카 노동자 1만 2천 명이 참가한 이 강연은 과거 칼레드가 윌슨 대통령에게 보낸 청원서와 비슷한 어조로 프랑스 식민 지배를 강경하게 규탄하였으며 알제리 무슬림들의 열악한 처지를 개관하는 가운데 정교분리법을 지키지 않는 프랑스의 식민 정책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무슬림들의 후부스 재산은 프랑스 국유재산에 병합되어 원래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분배되고 매각되었으며,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희박한 후부스 재산마저 식민 당국에 굴종적인 종교 결사를 통해 프랑스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었다.[167] 그는 이 연설을 마치면서 에리오 수상에게 보냈던 공개 서한을 청중들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이는 현실정치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 칼레드가 정교분리 의제를 보다 공개적이고 급진적인 형태로 제시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입장은 20세기 초부터 청년 알제리인 운동이 식민 당국의 종교 활동 통제를 비판해온 것과 맥을 같이 하며, 알제리 지방정치 속에서도 칼레드가 무슬림들이 누려야 할 예배의 자유를 추구했던 것과 일관된 행보였다.

1924년 이후 칼레드의 정치활동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에리오 정부로부터 파리를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은 그는 다시 망명길에 올라 정계에서 완전히 물러났다.[168] 1926년에 다마스쿠스에 정착한 칼레드는 같은 해 6월 파리에서 결성된 알제리 민족주의 조직 '북아프리카의 별(Étoile nord-africane)'의 초대 명예 회장을 맡기도 했으나,[169] 점차 이들

166) Ageron, "Enquête sur les origines," p. 42; Koulakssis and Meynier, *L'Emir Khaled*, pp. 120-121.
167) Khaled, "La Situation des Musulmans d'Algérie," p. 48.
168) Koulakssis and Meynier, *L'Emir Khaled,* pp. 121-124.
169) Aissaoui, "'Between Two Worlds'," p. 70.

과도 연락을 끊으면서 알제리 정치 사안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정치적 유산은 알제리 민족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공산당과 '북아프리카의 별'은 칼레드가 제시한 강령을 조직적 차원에서 계승하였고,[170] 알제리 현지에서 발전한 2세대 청년 알제리인 운동, 이슬람 개혁주의 운동 역시 그가 제기한 식민 체제 개혁 요구를 이어나갔다.[171] 이로써 칼레드를 비롯한 청년 알제리인 운동이 요구했던 이슬람 가족법을 유지한 시민권과 정교분리법의 완전한 적용은 1930년대 알제리 민족운동의 표준적인 강령이 되었다.[172] 1936년 1월 9일 칼레드가 다마스쿠스에서 사망했을 때 알제리 이슬람 개혁주의 운동의 지도자 압델하미드 벤바디스(Abdelhamid Ben Badis)는 "어제와 오늘의 알제리 정치인들은 모두 칼레드가 요구했던 것을 단지 정확히 계승했을 뿐"이라고 그를 추모하였다.[173] 다른 알제리 민족운동 인사들 역시 정파를 가리지 않고 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망명 중에 서거한 위대한 순교자", "이슬람의 영웅, 걸출한 알제리인"으로 에미르 칼레드의 유덕(遺德)을 기렸다.[174]

---

170) Mahfoud Kaddache and Mohamed Guenaneche, *L'Etoile nord-africaine, 1926-1937: documents et témoignages pour servir à l'étude du nationalisme algérien* (Alger: Office des Publications Universitaires, 1984), pp. 36-37; Le Maitron Dictionnaire Biographique, 2014년 3월 9일, "KHALED ibn El-Hachemi ibn el-hadj Abdelkader dit l'Émir Khaled [Dictionnaire Algérie] par René Gallissot," https://maitron.fr/spip.php?article157336 (최종검색일: 2023년 6월 30일).

171) James Mcdougall, *History and the Culture of Nationalism in Alger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74; idem, *A History of Algeria*, pp. 151-160.

172) 일례로 1936년 알제리 무슬림 대회에서 나타난 두 강령의 정식화에 관해서는 Collot and Henry, *Le Mouvement national algérien*, pp. 70-73 참고.

173) Ali Mérad, "L'émir Khaled (1875-1936) vu par Ibn Badis (1889-1940)," *Revue des mondes musulmans et de la Méditerranée*, no. 9 (1971), p. 33.

174) Koulakssis and Meynier, *L'Emir Khaled,* pp. 5-6; Carlier, "Medina and modernity," p. 73; Aissaoui, "'Between Two Worlds'," pp. 69-70.

Ⅴ. 결론

1935년 3월 14일 틀렘센의 무슬림 대표단은 프랑스 내무부 장관과 접견하는 자리에서 무슬림 주민들의 요구안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프랑스 의회 내 선주민 대표권, 평등한 군복무, 무슬림 사법 개혁, 삼림법 완화, 선주민 농업 융자, 노동조건·공중위생·보건의료 개선 등을 요구한 이 청원서는 종교 문제와 관련해 "알제리에서 예배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고 수많은 쿠란 학교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선주민들은 다른 종교들처럼 교회와 국가의 분리 법에 따라 자유로운 예배 수행이 그들에게 보장되기를, 그리고 종교 교육의 자유가 존중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렸다.[175] 1911년 틀렘센의 무슬림 명사들이 프랑스의 정교분리법 시행을 우려해 대규모 탈출을 감행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 바로 그 정교분리법의 완전한 시행을 요구하는 1935년 청원서의 내용은 그 사이 알제리 무슬림 사회에 나타난 분명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

기실 정교분리법의 완전한 적용은 1930년대 알제리 민족운동의 주요한 강령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슬람 개혁주의 운동, 알제리 인민당(Parti du peuple algérien, PPA), 알제리 공산당(Parti communiste algérien, PCA), 무슬림 당선인 연맹(Fédération des élus musulmans) 등 다양한 민족운동 단체들이 정파를 불문하고 이슬람 신앙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정교분리법의 엄격한 시행을 요구했다.[176] 이처럼 정교분리가 식민 치하 알제리에서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는 점은 기존 연구들 역시 주목한 바이지만, 바로 그 의제가 1905년 정교분리법 통과 직후부터 어떻게 형성되어갔는지는 분명하게 규명되지 못했다. 특히 20세기 초에 대두한 청년 알제리인 운동을 탐구한 연구들도 이 운동이 1908년부터 알제리에 발효한 정교분리법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바로 이 청년 알제리인 운동과 에미르 칼레드의 정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20세기 초 알제리 무슬림 지식인들이 정교분리

175) *L'Echo d'Alger*, 1935년 3월 15일.
176) Collot and Henry, *Le Mouvement national algérien*, pp. 54-142.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이를 자신들이 추구한 무슬림 시민권 기획에 어떻게 통합시켰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이들의 기획은 프랑스의 모순적인 라이시테 정책을 정확히 뒤집은 것으로서, '의무'로서 부과되는 사법상의 라이시테를 상대화하고 식민 당국이 무슬림들에게 부정한 '권리'로서의 라이시테, 즉 예배의 자유를 추구하는 대안적 형태의 '제국적 시민권'이었다. 비록 1천 명 가량의 느슨한 지식인 집단이었음에도 청년 알제리인 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칼레드를 중심으로 무슬림 대중의 지지를 받아 지방정치에서 피식민 선주민을 위한 새로운 시민권 부여를 요구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활동이 정교분리법에 적대적이었던 20세기 초 무슬림 사회의 여론과 향후 적극적으로 정교분리법 적용을 요구하는 알제리 민족운동의 발전 사이에 가교를 놓는 역할을 수행했다.

청년 알제리인 운동과 에미르 칼레드가 꿈꾼 새로운 형태의 '제국적 시민권'은 전간기 알제리 민족운동의 지속적인 요구안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 알제리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할 때까지 결코 완전하게 실현되지 못했다. 사법상의 라이시테 원칙을 완화하여 무슬림이 이슬람 가족법을 보유한 채로 프랑스 시민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은 1946년 5월 7일 라민-게예 법(Loi Lamine Guèye)을 통해 비로소 실현되었으나 여전히 선주민과 유럽인 정착민 사이에는 선거권 차별이 존재했다.[177] 아울러 정교분리법의 적용 문제는 1947년 알제리 기본법(statut organique de l'Algérie)에 따라 새롭게 창설된 알제리 의회(l'Assemblée algérienne) 내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되었지만, 무슬림 예배의 자유를 바라는 알제리 민족운동의 적극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끝에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알제리 독립전쟁을 맞아야 했다.[178] 결국 무슬림 정체성을 지키면서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누리고자 한 알제리인들의 염원은 '제국적 시민권'의 형태가 아니라 아랍-무슬림을 주요한 민족정체성으로 삼은 독립국가 알제리의 건설로 실현될 터였다. 그럼에도 칼레드를 비롯한 20세기 초 무슬림 지식인들의 시민권

177) Gilles Manceron, *Marianne et les colonies*, 우무상 옮김, 『프랑스 공화국 식민사 입문』(경북대학교출판부, 2013), pp. 225, 230.
178) Achi, "L'islam authentique appartient à Dieu," pp. 61-65.

구상은 단지 알제리 민족주의를 정초했다는 의의에만 갇히지 않는다. 프랑스의 라이시테를 무슬림의 관점에서 받아들여 재전유하고자 한 이들의 시도는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 혹은 무슬림 정체성 간의 긴장이 지속되는 현실 속에서 더욱 큰 울림을 준다. 이들의 대안적 시민권 기획에는 분명 논리적 모순이 존재했지만 그것은 라이시테와 시민권을 연동해 무슬림을 열등한 지위로 고착화시킨 식민지 현실을 돌파하려는 시도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그만큼 라이시테 개념이 복합적이고 해체 가능한 역사적 구성물임을 입증하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지식인들이 감수한 라이시테 상의 논리적 모순은 식민 통치가 부과한 세속적 틀 내에서 이슬람의 자율적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발휘된 정치적 유연성 및 그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슬람 세계의 세속화와 근대화 문제를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따라서 20세기 초 식민지 알제리의 근대적인 무슬림 지식인들이 시민권과 라이시테를 둘러싸고 벌인 지적·정치적 분투의 역사는 오늘날 라이시테의 의미를 되묻고 이슬람과 세속적 정치 질서 간의 관계를 진지하게 사유하게 만드는 귀중한 계기를 제공한다.

참고문헌

Ⅰ. 1차 사료

1. 정부 문서

Délégations financières algériennes.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Débats parlementaires. Chambre des députés.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Lois et décrets.

Gouvernement Général de l'Algérie, *L'Exode de Tlemcen en 1911* (1914).

2. 언론

La République du Var.

L'Echo d'Alger.

Le Petit Journal.

Les Nouvelles.

L'Humanité.

L'Ikdam.

L'Islam.

3. 에미르 칼레드의 저서와 연설 자료

Khaled, Emir, *Réflexions sur le rapprochement franco-arabe en Algérie / par l'émir Khaled petit-fils d'Abdelkader* (Alger: Imprimerie Gojosso, 1913).

————, Omar Bouderba and Docteur Bentami, *Interpellations sur la Politique Indigène en Algérie - Mise au point et précisions En Réponse au Discours de Mr. Broussais* (Alger: Imprimerie Gojosso, 1914).

————, "Pétition de L'Emir Khaled adressée au Président des Etats-Unis Wilson (1919)," in Mahfoud Kaddache, *L'Emir Khaled: Documents et témoignages pour servir à l'étude du nationalisme algérien* (Alger: Office des Publications Universitaires, 1987).

————, "La Situation des Musulmans d'Algérie," in *Lettre au Président Wilson et autres textes* (Alger: ANEP, 2005).

4. 기타 당대 자료

Biré, Anatole, *Étude sur la condition juridique des églises, temples, presbytères* (Paris: A. Giard, 1890).

Fekar, Benali, "La répresentation des musulmans Algériens," *Revue du monde musulman*, vol. VII, no. I-II (1909).

Pinon, René, "La Séparation des Églises et de l'État en Algérie," *Revue des Deux Mondes*, 5e période, vol. 42, no. 4 (1907).

Ⅱ. 2차 자료

1. 단행본

박단,『프랑스의 문화전쟁 - 공화국과 이슬람』(책세상, 2005).

한동훈,『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laïcité)의 원칙』(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Ageron, Charles-Robert, *Les Algériens musulmans et la France (1871-1919)*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8).

————, *Histoire de l'Algérie contemporaine*, Tome 2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79).

'Asalī, Bassām, *al-Amīr Khālid al-Hāshimī al-Jazā'irī wa-al-difā' 'an Jazā'ir al-Islām* (Beirut: Dār al-Nafā'is, 1986).

Asseraf, Arthur, *Electric News in Colonial Alger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Belmessous, Saliha, *Assimilation and Empire: Uniformity in French and British Colonies, 1541-195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Bouveresse, Jacques, *Un parlement colonial? Les délégations financières algériennes 1898-1945* (Mont-Saint-Aignan: Publications des universités de Rouen et du Havre, 2008).

Chitour, Chems Eddine, *Histoire de l'Algérie* (Alger: Chihab Éditions, 2019).

Collot, Claude and Jean-Robert Henry, *Le Mouvement national algérien: textes, 1912-1954* (Paris: L'Harmattan, 1978).

Confer, Vincent, *France and Algeria: the Problem of Civil and Political Reform, 1870 - 1920*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1966).

Cooper, Frederick, *Citizenship Between Empire and Nation: Remaking France and French Africa, 1945 - 196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 *Citizenship, Inequality, and Difference: Historical Perspectiv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Djeghloul, Abdelkader, *Eléments d'histoire culturelle algérienne* (Alger: ENAL, 1984).

Fogarty, Richard S., *Race and War in France: Colonial subjects in*

the French Army, 1914-1918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8).

Hassett, Dónal, *Mobilizing Memory: The Great War and the Language of Politics in Colonial Algeria, 1918-193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Kaddache, Mahfoud, *La vie politique à Alger de 1919 à 1939* (Alger: SNED, 1970).

——————— and Mohamed Guenaneche, *L'Etoile nord-africaine, 1926-1937: documents et témoignages pour servir à l'étude du nationalisme algérien* (Alger: Office des Publications Universitaires, 1984).

————, *L'Emir Khaled: Documents et témoignages pour servir à l'étude du nationalisme algérien* (Alger: Office des Publications Universitaires, 1987).

————, *Histoire du nationalisme algérien, Tome I, 1919 - 1939* (Alger: EDIF, 2003[2000]).

Koulakssis, Ahmad and Gilbert Meynier, *L'Emir Khaled, premier za'im? Identité Algérienne et colonialisme français* (Paris: L'Harmattan, 1987).

Manceron, Gilles, *Marianne et les colonies*, 우무상 옮김, 『프랑스 공화국 식민사 입문』(경북대학교출판부, 2013).

Manela, Erez, *The Wilsonian Moment: Self Determination and the International Origins of Anticolonial Na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Mcdougall, James, *History and the Culture of Nationalism in Alger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A History of Alger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Mérad, Ali, *Le réformisme musulman en Algérie de 1925 à 1940*

(Paris: Mouton, 1967).

Saaïdia, Oissila, *Algérie coloniale. Musulmans et chrétiens : le contrôle de l'État (1830-1914)* (Paris: CNRS Editions, 2015).

Sellam, Sadek, *La France et ses musulmans. Un siècle de politique musulmane (1895-2005)* (Paris: Fayard, 2006).

Surkis Judith, *Sex, Law, and Sovereignty in French Algeria, 1830 - 1930*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9).

Zahir, Ihaddaden, *Histoire de la presse indigène en Algérie: des origines jusqu'en 1930* (Alger: ENAL, 1983).

2. 논문

박단, 「'히잡 착용 금지 논쟁'과 무슬림이민자 통합 문제」, 『프랑스사 연구』, 38호 (2018).

——, 「프랑스 내 무슬림 차별 기원으로서의 식민주의 유산 - 프랑스의 알제리 식민지 동화정책과 시민권 문제를 중심으로」, 『통합유럽연구』, 11권 3집 (2020).

——, 「프랑스 내 무슬림 차별 기원과 공화주의 유산 - '1905년 법'과 그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유럽연구』, 제12권 1집 (2021).

임승휘, 「근대 초 프랑스의 정치적 세속화」, 김응종·민유기 외 지음, 『프랑스의 종교와 세속화의 역사』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조희선, 「이슬람의 가족법, 여성권리의 시각에서 본 개혁의 가능성-이집트의 가족법 변화를 통한 고찰」, 『지중해지역연구』, 제6권 제1호 (2004).

Achi, Raberh,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à l'épreuve de la situation coloniale. Les usages de la dérogation dans l'administration du culte musulman en Algérie (1905-1959)," *Politix*, vol. 17, no. 66 (2004).

———, “Les apories d'une projection républicaine en situation coloniale: la dépolitisation de la séparation du culte musulman et de l'État en Algérie,” in Pierre-Jean Luizard, ed., *Le choc colonial et l'islam* (Paris: La Découverte, 2006).

———, “L'islam authentique appartient à Dieu, “l'islam algérien” à César,” *Genèses*, vol. 69, no. 4 (2007).

———, “Laïcité d'empire: Les débats sur l'application du régime de séparation à l'islam impérial,” in Patrick Weil, ed., *Politiques de la laïcité au XXe siècl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7).

———, “La laïcité, une cause anticoloniale. La mobilisation de la mouvance réformiste musulmane contre l'administration de l'islam en Algérie coloniale,” in Amin Elias, Augustin Jomier and Anaïs-Trissa Khatchadourian, ed., *Laïcités et musulmans. Débats et expériences (XIXe-XXe siècles)* (Berne: Peter Lang, 2014).

———, “A Counter-History of Laïcité: France and Islam in 1905,” *Political Theology*, vol. 22, no. 2 (2021).

Ageron, Charles-Robert, “Enquête sur les origines du nationalisme algérien. L'émir Khaled, petit-fils d'Abd El-Kader, fut-il le premier nationaliste algérien?,” *Revue de l'Occident musulman et de la Méditerranée*, no. 2 (1966).

———, “Les migrations des musulmans algériens et l'exode de Tlemcen (1830-1911),” *Annales. Economies, sociétés, civilisations*, vol. 22, no. 5 (1967).

———, “Clemenceau et la question coloniale,” in Société des amis de Georges Clemenceau, ed., *Clemenceau et la justice* (Paris: Publications de la Sorbonne, 1983).

———, “Le mouvement Jeune-Algérien de 1900 à 1923,” in *Genèse*

de l'Algérie algérienne. Volume 2 (Paris: Editions Bouchène, 2005).

Aissaoui, Rabah, "'Between Two Worlds': Emir Khaled and the Young Algerians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in Algeria," in Rabah Aissaoui and Claire Eldridge, ed., *Algeria Revisited: History, Culture and Identity*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2017).

Allouche-Benayoun, Joëlle, "Les enjeux de la naturalisation des Juifs d'Algérie: du dhimmi au citoyen," in Pierre-Jean Luizard, ed., *Le choc colonial et l'islam* (Paris: La Découverte, 2006).

Baubérot, Jean, "La laïcité en crise?," *Informations sociales*, vol. 136, no. 8 (2006).

———, "Sécularisation, laïcité, laïcisation," *Empan*, vol. 90, no. 2 (2013).

———, "Une laïcité conviviale," *Revue du MAUSS*, vol. 43, no. 1 (2014).

Bellon, Christophe, "France laïque, fille de compromis," *Etudes*, no. 2 (2019).

Blévis, Laure, "La citoyenneté française au miroir de la colonisation : étude des demandes de naturalisation des « sujets français » en Algérie coloniale," *Genèses*, vol. 53, no. 4 (2003).

———, "En marge du décret Crémieux. Les Juifs naturalisés français en Algérie (1865 - 1919)," *Archives Juives*, vol. 45, no. 2 (2012).

Bozzo, Anna, "Islam et citoyenneté en Algérie sous la IIIe République: logiques d'émancipation et contradictions coloniales (l'exemple des lois de 1901 et 1905)," in Pierre-Jean Luizard, ed., *Le choc colonial et l'islam* (Paris: La Découverte, 2006).

———, "Société civile et citoyenneté en Algérie: essor et déclin d'un

mouvement associatif indépendant (xix-xxe siècle)," in Anna Bozzo and Pierre-Jean Luizard, ed., *Les sociétés civiles dans le monde musulman* (Paris: La Découverte, 2011).

Busson de Janssens, Gérard, "La séparation du culte musulman et de l'état en Algérie," *Revue des Études islamiques*, vol. 22, no. 1 (1948).

Carlier, Omar, "Medina and modernity: the emergence of Muslim civil society in Algiers between the two World Wars," in Zeynep Celik, Frances Terpak and Julia Clancy-Smith, ed., *Walls of Algiers: Narratives of the City Through Text and Image* (Los Angeles: Getty Research Institute;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9).

Carret, Jacques, "Le problème de l'indépendance du culte musulman en Algérie," *L'Afrique et l'Asie*, no. 37 (1957).

Chalabi, El-Hadi, "Un juriste en quête de modernité: Benali Fekar," in Aïssa Kadri, ed., *Parcours d'intellectuels maghrébins: scolarité, formation, socialisation et positionnements* (Paris: Karthala, 1999).

Courreye, Charlotte, "L'Association des Oulémas Musulmans Algériens et la construction de l'État algérien indépendant: fondation, héritages, appropriations et antagonismes (1931-1991)" (PhD diss., Université Sorbonne Paris Cité, 2016).

De Lellis, Francesca, "L'Algeria Coloniale e La Legge di Separazione delle Chiese dallo Stato del 1905," *Africa: Rivista trimestrale di studi e documentazione dell'Istituto italiano per l'Africa e l'Oriente*, vol. 59, no. 3/4 (2004).

Driessen, Michael Daniel, "Religiously friendly democracy: Framing political and religious identities in Catholic and Muslim societies" (PhD diss., University of Notre Dame, 2011).

El Hassar, Abdelkader Salim, “Les « Jeunes Algériens » Procédés et engagement Analyse du discours politique de Si M’hamed Ben Rahal et Ben Ali Fekar” (PhD diss., Université Abou Bekr Belkaid Tlemcen, 2019).

Frégosi, Franck, “Islam et état en algérie. Du gallicanisme au fondamentalisme d'état,” *Revue des mondes musulmans et de la Méditerranée*, no. 65 (1992).

Fromage, Julien, “L'expérience des «Jeunes Algériens» et l'émergence du militantisme moderne en Algérie (1880-1919),” in Abderrahmane Bouchène, Jean-Pierre Peyroulou, Ouanassa Siari Tengour and Sylvie Thénault, ed., *Histoire de l’Algérie à la période coloniale* (Paris: La Découverte, 2014).

Gheziel, Abla, “L'éveil politique de la société algérienne à travers révoltes, soumission, assimilation et nationalisme, 1830-1936” (PhD diss., Université Toulouse le Mirail - Toulouse II, 2015).

Hassett, Dónal, “Reinventing Empire in the Wake of the Great War: Imperial Citizenship and the “Wilsonian Moment” in Colonial Algeria,” *Comparativ*, vol. 26, no. 6 (2016).

————, “Defining Imperial Citizenship in the Shadow of World War I: Equality and Difference in the Debates around Post-War Colonial Reform in Algeria,” in Gearóid Barry, Enrico Del Lago and Róisín Healy, ed., *Small Nations and Colonial Peripheries in World War I* (Leiden: Brill, 2016).

Heggoy, Alf Andrew, “Education in French Algeria: An essay on cultural conflict,”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vol. 17, no. 2 (1973).

Hermassi, Abdellatif, “Ulamas réformistes et religiosité populaire. Approche sociologique d’un différend tuniso-algérien,” *Insaniyat*, no. 31 (2006), https://doi.org/10.4000/insaniyat.9678 (최종검색일:

2023년 6월 28일).

Mahieddine, Nahas Mohamed, “La pensée politique de Mustafa Kemal Atatürk et le Mouvement national algérien,” *Insaniyat*, no. 25-26 (2004).

Mann, Michelle, “Not Quite Citizens: Assimilation, World War One and the question indigène in Colonial Algeria 1870-1920” (PhD diss., Brandeis University, 2017).

———, “The Young Algerians and the Question of the Muslim Draft, 1900-14,” in Rabah Aissaoui and Claire Eldridge, ed., *Algeria Revisited: History, Culture and Identity*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2017).

McDougall, James, “The secular state's Islamic empire: Muslim spaces and subjects of jurisdiction in Paris and Algiers, 1905-1957,”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52, no. 3 (2010).

Mérad, Ali, “L'émir Khaled (1875-1936) vu par Ibn Badis (1889-1940),” *Revue des mondes musulmans et de la Méditerranée*, no. 9 (1971).

Michel, Renard, “Expériences musulmanes du droit et de la justice dans le champ religieux en Algérie coloniale,” *Histoire de la justice*, vol. 16, no. 1 (2005).

Papi, Stéphane, “Le contrôle étatique de l’islam en Algérie : un héritage de l’époque coloniale,” *L’Année du Maghreb*, no. VI (2010), https://doi.org/10.4000/anneemaghreb.951 (최종검색일: 2023년 6월 28일).

Renucci, Florence, “Le statut personnel des indigènes: comparaison entre les politiques juridiques française et italienne en Algérie et en Libye (1919-1943)” (PhD diss., Université Aix-Marseille 3, 2005).

Saaïdia, Oissila, “L′anticléricalisme article d′exportation? Le cas de l′Algérie avant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vol. 87, no. 3 (2005).

———, “L’invention du culte musulman dans l’Algérie coloniale du xixe siècle,” *L’Année du Maghreb*, no. 14 (2016), https://doi.org/10.4000/anneemaghreb.2689 (최종검색일: 2023년 6월 28일).

Shepard, Todd, “Algerian nationalism, Zionism, and French laïcité: A history of ethnoreligious nationalisms and decolon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vol. 45, no. 3 (2013).

Smith, Andrea L., “Citizenship in the colony: Naturalization law and legal assimilation in 19th century Algeria,” *PoLAR: Political and Legal Anthropology Review*, vol. 19, no. 1 (1996).

Thénault, Sylvie, “Le « code de l′indigénat »,” in Abderrahmane Bouchène, Jean-Pierre Peyroulou, Ouanassa Siari Tengour and Sylvie Thénault, ed., *Histoire de l’Algérie à la période coloniale* (Paris: La Découverte, 2014).

Tlili, Béchir, “L′Algérie au lendemain de la grande guerre: revendications et reformisme: un document inedit sur la situation politique et administrative des indigènes de l′Algérie (1920-1921),” *Les cahiers de Tunisie: revue de sciences humaines*, vol. 22, no. 87-88 (1974).

Unger, Gérard, “Les débats parlementaires lors de la loi de 1905,” *Matériaux pour l′histoire de notre temps*, vol. 78, no. 1 (2005).

Weil, Patrick, “Le statut des musulmans en Algérie coloniale - Une nationalité française dénaturée,” *Histoire de la justice*, vol. 16, no. 1 (2005).

Zack, Lizabeth, “Early origins of Islamic activism in Algeria: the case

of Khaled in post-World War I Algiers," *Journal of North African Studies*, vol. 11, no. 2 (2006).

3. 인터넷 자료

Le Maitron Dictionnaire Biographique, 2014년 3월 9일, "KHALED ibn El-Hachemi ibn el-hadj Abdelkader dit l'Émir Khaled [Dictionnaire Algérie] par René Gallissot," https://maitron.fr/spip.php?article157336 (최종검색일: 2023년 6월 30일).

Abstract

Citizenship and *Laïcité* in Early Twentieth-Century Colonial Algeria

- Emir Khaled's political activity and the re-appropriation of *laïcité*-based citizenship -

Hana Lee
Department of Wester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nvestigates duality in the colonial practice of French *laïcité* and how Muslim intellectuals responded to it in early 20th-century colonial Algeria. *Laïcité* is considered the golden rule of the contemporary French Republic, but it has never been applied consistently in colonial Algeria. On the one hand, France imposed judicial *laïcité* on Algerian Muslims by stipulating that they had to

renounce their religious personal status law and follow French civil law to obtain full citizenship. On the other hand, when applying the 1905 Law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to Algeria, France did not uphold *laïcité* by adopting measures to effectively neutralize the law so that the colonial authorities could control the religious activities of the Muslim population. While the former was a policy of *laïcité* as an 'obligation' imposing a separation between religion and the public sphere on Algerian Muslims, the latter was a deprivation of *laïcité* as a 'right' to freedom of worship from the Muslim population. As a result, most Algerian Muslims unable to renounce Islamic civil law remained in the status of 'subjects' excluded from French citizenship while being denied the possibility of autonomous religious practice from the colonial state due to the de facto nullification of the 1905 Law. These *laïcité* policies operating in opposite directions between the realms of law and worship in colonial Algeria were ultimately justified from a security perspective in which Muslims were a 'danger' to France.

The colonial *laïcité* policy functioning to restrict the civil rights of Algerian Muslims confronted challenges from the *Jeune Algérien* (Young Algerian) movement, a group of modern Muslim intellectuals emerging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They demanded greater rights for Algerian subjects as compensation for the conscription and participation in World War I. This thesis examines how these Muslim intellectuals addressed the issue of *laïcité* that clashed with their own identity in pursuing new postwar citizenship for Algerian Muslims. While previous studies have provided a detailed examination of the civil rights demands of the Young Algerian movement, the ways these intellectuals reacted to the Law of Separation that came into effect in Algeria in 1908 received little

attention. As a result, notwithstanding the well-known fact that the Algerian national movement demanded the complete application of the 1905 Law in the 1930s and beyond, it is not clear how Muslim intellectuals shaped such demand before the 1930s, thereby dealing with the inconsistency in the colonial *laïcité* policy in the early 20th century. By integrating accounts of the civil rights demands of the Young Algerian movement with those of the initial responses to the Law of Separation, this thesis reveals how Muslim intellectuals appropriated French *laïcité* and reconfigured it into a new form of 'imperial citizenship'.

In this regard, the thesis focuses on Emir Khaled, a central leader of the Young Algerian movement, who was the first in the Algerian national movement to demand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1905 Law. Muslim intellectuals, led by Khaled, sought to achieve 'equality' for Algerian subjects with French citizens and respect for the 'differences' associated with the Islamic faith. Khaled called for easing the judicial principle of *laïcité* as a prerequisite for French citizenship so that Algerian Muslims could enjoy civil rights while maintaining their Muslim personal status. To justify his demand, he pointed out the sacrifices of Algerian Muslims in World War I as evidence of their allegiance to France and precedents in other colonies for granting citizenship to people retaining their religious personal status. This argument provided a logic of 'loyalty' to refute the security perspective that Muslims were dangerous while advocating an alternative form of citizenship loosening legal *laïcité* as a pragmatic approach to the complicated realities of the empire.

In contrast to an attempt to relax judicial *laïcité*, Khaled pursued the strict application of '*laïcité* as a right' in the realm of religious practice. By denouncing the French colonial authority for acting

against the Law of Separation, he called for the guarantee of *laïcité*, which meant freedom of worship when regulating religious practices was concerned. After being elected to the Algerian Financial Delegations (Délégations financières algériennes) in 1920, Khaled took an ambiguous attitude toward the 1905 Law by proposing an increase in the budget for Muslim worship instead of immediately separating religion and state. This should be understood as an endeavor to ensure the practical preservation of Islamic religious activities, considering a situation where colonized Algerian Muslims were deprived of an autonomous religious financial base. Despite the constraints of colonial reality, he continued to seek religious autonomy by confronting Muslim figures subservient to the colonial authority and demanding freedom of pilgrimage to Mecca for the Muslim population. Only in 1924, freed from realpolitik considerations, was Khaled able to publicly call for the complete application of the 1905 Law of Separation to Algeria. This political move of Khaled was the first moment in the history of the Algerian national movement that a demand for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appeared in an explicit form of political program, and it was consistent with Khaled's previous political activism in favor of *laïcité* as a right.

To sum up, the intellectuals of the Young Algerian Movement, led by Khaled, sought a new form of imperial citizenship that would weaken the legal *laïcité* imposed on Algerian Muslims as an 'obligation' and guarantee them the '*laïcité* as a right' meaning freedom of worship as one of their civil liberties. While recognizing an apparent contradiction in their demands, this thesis argues that such a contradic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n attempt to break through the colonial realities that linked *laïcité* with citizenship to relegate Muslims to an inferior status. This argument suggests that

French *laïcité* is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open to deconstruction and reconfiguration by various political actors. In short, by reappropriating the contradictory *laïcité* policies in the context of reimagining imperial citizenship in the aftermath of World War I, early 20th-century Muslim intellectuals in colonial Algeria offered an alternative to the principles of French republicanism, which had been unable to embrace the heterogeneous subjects in the empire.

keywords : Colonial Algeria, Citizenship, Laïcité, Islam, the Jeune Algérien movement, Emir Khaled
Student Number : 2017-26701